간행물등록번호
11-1480000-001903-01

최종보고서 • 2022. 9.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 정립 연구 용역

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제 출 문

국가물관리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 정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 창 훈**

참 여 연 구 진

▌예비검토기관

연구책임자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형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문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동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정기철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양일주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아영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수빈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박준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전문검토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김홍태	연구관
	최문수	전문위원
	오승영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성규	수석연구원
	오혜철	수석연구원
	오현제	선임연구위원
	한상종	수석연구원
	이재엽	수석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
한국농어촌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태성	연구관

차 / 례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5

제2장 부합성 심의 및 예비검토의 법적근거와 사례 검토 ····· 9

제1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 9

1. 법적 근거 ····· 9
2. 부합성 개념 검토 ····· 11

제2절 국내외 유사부합성 사례 ····· 11

1. 국내 사례 ····· 11
2. 국외 사례 ····· 22

제3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조사 결과 시사점 ····· 28

1. 제도 분석 결과 ····· 28
2. 시사점 ····· 30

제3장 부합성 예비검토 사례 ····· 35

제1절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및 대상계획 ····· 35

제2절 부합성 예비검토 이행계획 ····· 37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37
2. 국가수도기본계획 ····· 55

제3절 시사점 및 개선점 ····· 61

1. 시사점 ····· 61
2. 개선점 ····· 62

제4장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개선 및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65

제1절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및 운영 정립 방향 ····· 65

1. 부합성 심의 절차의 효율성 개선 ····· 65
2. 예비검토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의 보완점 개선 ····· 69
3. 부합성 관리체계 개선 검토 ····· 70

제2절 부합성 심의 운영 예산(안) ····· 71

1. 개요 ····· 71
2. 예산(안) ····· 71

제3절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설명회 ····· 81

1. 계획수립권자 대상 설명회 ····· 81
2. 검토기관 대상 설명회 ····· 82
3. 설명회 개최 시사점 ····· 84

제4절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 84

1. 가이드라인 개요 ····· 84
2. 가이드라인 목차 및 주요내용 ····· 85
3. 시사점 및 개선점 ····· 86

제5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개선방안 ····· 87

1. 부합성 검토에 대한 정의 명확화 ····· 87
2. 부합성 심의 전과정에 대한 통합지침 마련 ····· 88
3. 부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기준, 방법의 표준화 필요 ····· 88
4. 기본계획 요소별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한 범위 결정 필요 ····· 89
5. 부합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91
6.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와의 연계 확대 ····· 91
7. 대상 계획별 주요 체크사항 마련 ····· 92
8.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교육 확대 및 홍보자료 마련 ····· 94

9.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 94
10. 대상계획 수립 작성지침에 부합성 심의사항 추가 ····· 95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9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99

1. 부합성 검토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99
2.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결과 ····· 100
3. 부합성 검토 예산(안) ····· 101
4. 부합성 심의·검토 설명회 ····· 102
5.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 102

제2절 제언: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개선방안 ····· 103

참고문헌 ····· 111

부록 1.「국토기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115
부록 2.「국회법」제84조 ····· 117
부록 3. 부합성 예비검토 주관기관 예산(안) ····· 118
부록 4. 부합성 예비검토 가이드라인(안) ····· 123

표 / 차 / 례 /

〈표 2-1〉「물관리기본법」 부합성 심의 관련 법 조항 및 내용 ····· 10
〈표 2-2〉「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12
〈표 2-5〉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 17
〈표 2-3〉 정책성 타당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작성 예시 ····· 14
〈표 2-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 14
〈표 2-5〉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 17
〈표 2-6〉 국토계획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급화 및 점수화 ····· 19
〈표 2-7〉 국토계획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 19
〈표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작성 예시 ····· 21
〈표 2-9〉 제4차 NCA 평가보고서의 평가 기준 ····· 23
〈표 2-10〉 평가 시 등급 및 점수 기준 ····· 24
〈표 2-11〉 Climate policy coherence in Caribbean SIDS ····· 25
〈표 2-12〉 3대 주제 및 8대 원칙 세부 내용 ····· 27
〈표 2-13〉 OECD PCSD 체크리스트 예시 ····· 27
〈표 3-1〉「하수도법」 제4조의2 ····· 37
〈표 3-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 ····· 38
〈표 3-3〉 부합성 평가 결과(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46
〈표 3-4〉 부합성 평가 결과(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48
〈표 3-5〉 부합성 평가 결과(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50
〈표 3-6〉 부합성 평가 결과(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52
〈표 3-7〉 부합성 평가 결과(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54
〈표 3-8〉「수도법」 제4조 ····· 56
〈표 3-9〉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 56
〈표 3-10〉 부합성 평가 결과(국가수도기본계획) ····· 59
〈표 4-1〉 부합성 심의 최종결과 비교 ····· 68
〈표 4-2〉 사업시행 구조(안) ····· 73
〈표 4-3〉 검토 비용 지급 방안별 장·단점 ····· 76
〈표 4-4〉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고려한 예산(안) ····· 77
〈표 4-5〉 연도별 부합성 예비검토 계획수에 따른 기관별 예상 참여건 ····· 78

〈표 4-6〉 기관별 시행시 예상 참여비율 ····· 78
〈표 4-7〉 기관별 시행시 예산(안) ····· 79
〈표 4-8〉 기관별 시행 하에 총괄기관 예산(안) ····· 79
〈표 4-9〉 총괄 예산(안) ····· 80
〈표 4-10〉 예비검토 원칙 및 판단기준 ····· 85
〈표 4-11〉 유사계획 간의 예비검토 결과 차이 발생 사례 ····· 89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 체계도 ····· 6
〈그림 2-1〉 KISTEP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 13
〈그림 2-2〉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 ····· 16
〈그림 2-3〉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대상) 절차 ····· 18
〈그림 2-4〉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및 수행 주체 ····· 20
〈그림 2-5〉 Framework for climate policy coherence ····· 24
〈그림 2-6〉 3대 주제 및 8대 원칙 ····· 26
〈그림 3-1〉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 35
〈그림 3-2〉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 40
〈그림 3-3〉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 41
〈그림 3-4〉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 42
〈그림 3-5〉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 44
〈그림 3-6〉 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 45
〈그림 3-7〉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 ····· 58
〈그림 4-1〉 부합성 심의 절차 ····· 66
〈그림 4-2〉 총 부합성 검토 비용 산정 개념 ····· 74
〈그림 4-3〉 예비검토 작성 가이드라인 절차 ····· 86
〈그림 4-4〉 국가계획 부합성 검토의 계획요소별 주요 검토 내용(안) ····· 90
〈그림 4-5〉 예비검토시 검토 필요 항목 체크리스트 예시 ····· 92
〈그림 4-6〉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검토시 계획요소별 주요 판단 사항 예시 ····· 93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물관리기본법」이 수립('19.6)됨에 따라 본 법 제27조[1]를 근거로 하여 환경부 장관은 10년 주기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변경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2021년 ~ 2030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 전역(4대 유역, 17개 시도, 하구·연안 포함)에 적용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21.6)하였다.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 체계의 정비와 함께 제1차 국가계획 수립 후 그동안 부처별, 부문별로 수립되어 왔던 법정 계획은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 중심으로 체계적,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관리기본법」 제22조, 제24조,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수립되는 물관련 계획들이 국가계획 및 유역계획에 부합한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의결에 관한 조항은 흩어져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물관련 정책과 계획간 통합적 조정을 도모·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능이며 이는 물관리 관련 계획간의 부합성 확보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합성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를 도입하여 체계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물 관련 계획과 계획 간 부합성 검토는 거의 부재한 형편이며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부합성 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국가계획과 물관련 법정계획의 부합성 예비검토 체계 정립 및 지원·수행을 실시하고 부합 여부에 대한 올바른 심의·의결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연구·공공기관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여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근거 및 검토의견 등 예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체계를 직접 이행하고 예비검토 절차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해당 계획별 부합성 심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판별하여 검토기관별 부합근거 및 검토의견을 포함한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및 종합의견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소요인력 · 예산(안) 산출과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수립권자, 예비검토지원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합성 심의제도 운영 · 체계의 이해도 제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및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①부합성 검토제도 법적근거 및 사례 조사, ②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③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 및 작성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부합성 검토제도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부합성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물관리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의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부합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평가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즉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부합성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사례에 사용된 평가 방법으로는 '높음/보통/낮음', 등급 및 점수화, 체크리스트(YES/NO), 서술식 총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사례는 실제 작성된 총 6건의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순서로 예비검토 진행순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부합성 심의요청서 내용을 살펴본 뒤 해당 계획 예비검토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예비검토를 진행하고자 예비검토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요인력 및 예산(안) 산출 등을 통해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예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실제 예비검토를 진행하며 사례를 축척하고 개선 및 보완점 검토를 통해

절차를 확립고자 하였으며, 소요 인력 및 검토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산출하였다. 예산(안)의 경우는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안)과 기관별 개별 시행하는 예산(안)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검토비 지급방안 혹은 참여비율 조정을 통해 2가지 안의 총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전문기관 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부합성 예비검토를 위해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검토기관별 담당자들이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를 수행하기 전 참고해야 할 사항들로 부합성 예비검토 개요 및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원칙,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물관리위원회지원단 및 전문검토기관, 계획작성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개선을 위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단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의 1단계로 부합성 개념 및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부합성 연관 제도 분석과 연구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으며 부합성 개념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실행방안」 연구에서 부합성 심의 법적근거 및 사례에 관해 선행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분 대체하고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외 사례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세부평가기준 및 예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단과 예비·전문검토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다. 예비검토 심의 절차 마련과 예비검토 심의 절차 중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기간을 총 20일로 설정하고 예비검토기관 및 전문검토기관의 역할에 따른 기간 설정 및 행정업무를 위한 기간을 제시하여 예비검토 절차를 마련하였다.

3단계와 4단계는 부합성 설명회 개최와 부합성 예비 검토 및 지원 수행 단계로서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수립권자와 전문검토기관을 대상으로 부합성 심의 제도 운영 및 체계의 이해도 제고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각 1회씩 진행하여 총 2회 개최하였다.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은 지원단에 대상 계획이 접수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대상 계획 심의요청서와 함께 KEI에 공문으로 접수되어 진행하였다.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타자료와 관련

양식들은 메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KEI로 공문이 접수되면 심의 대상 계획별 전문검토기관에 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주어진 기간 내 작성된 예비검토 보고서를 취합 및 종합의견 작성 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예비검토 보고서를 지원단에 공문 및 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의 대상 계획 총 6건의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예정이었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4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경우 심의 접수가 지연되어 향후 일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5단계는 부합성 심의 운영제도 개선안 마련으로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면서 예비검토 보고서 부합성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정적 개선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비검토 보고서 부합성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은 앞서 언급한 설명회와 각 검토기관별로 담당자 및 KEI 연구진 논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부합성 예산(안)은 먼저 전문검토기관 검토비 산정 기준을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 후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회의비용과 기타행정비용 등을 추가하여 전체 예산(안)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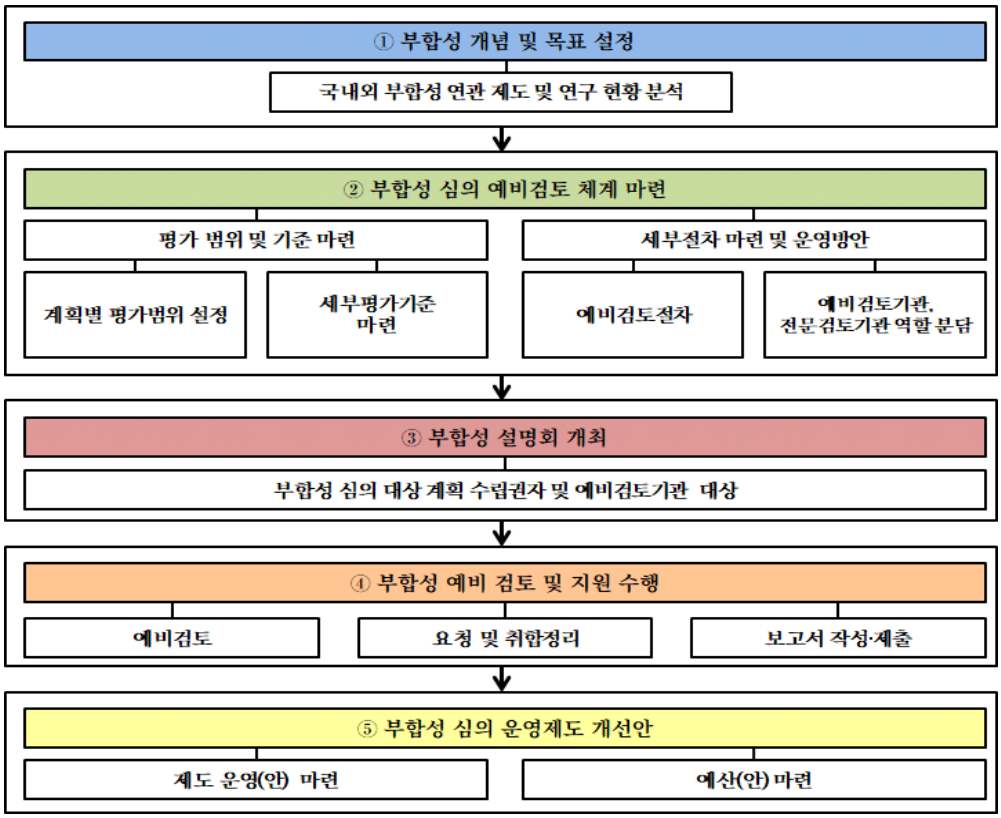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체계도

제2장

부합성 심의 및 예비검토의 법적근거와 사례 검토

- 제1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 제2절 국내외 유사부합성 사례
- 제3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조사 결과 시사점

제2장 부합성 심의 및 예비검토의 법적근거와 사례 검토

제1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1. 법적 근거

부처별, 부문별로 수립되어왔던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은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계획 중심으로 정비되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집중호우,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 유역관리로의 전환 등 통합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물관리 현안 증가 및 물분쟁 발생을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물관리기본법('19.6)」이 제정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 · 의결하며.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심의 · 의결하며 제28조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유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이다

국가계획이 2021년 6월에 수립되고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부합성 심의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합성 심의를 위한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물 관련 계획 간 부합성 심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며 부합성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먼저 국내외 유사부합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 부합성 예비검토를 수행하며 시사점 및 개선점을 근거로 부합성 심의 체계

마련을 통해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국가계획·유역종합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2-1〉「물관리기본법」 부합성 심의 관련 법 조항 및 내용

구분	내용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국가물관리위원회(2021).「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실행방안」
국가법령정보센터,「물관리기본법」, 검색일: 2022.5.3.

2. 부합성 개념 검토

국내외 유사 부합성 심의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외 부합성(정합성) 개념 선행 연구를 통해 부합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합성의 개념은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적 측면에서 해석된다. 법의 부합성(정합성)은 규정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법령이 존재하며,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관련된 법령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양석진, 2009). 즉 사전적 의미로 논리적 무모순성을 의미한다(조은설, 2018). 이와 같은 법의 정합성은 수평적 정합성과 수직적 정합성이 존재한다. 수직적 정합성이라 함은 법 효력과 관련하여 상·하위법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이 일관된 통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정합성이라 함은 수직적으로 동위에 있는 법령간의 모순이나 충돌, 흠결이 없으며 법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양석진, 2009).

제도(정책)의 정합성이란 제도 요소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부합성(congruence 또는 consonance)으로 간주될 수 있다(정정길, 2002). 이러한 제도의 정합성은 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의 근본적인 질문이며(전상환, 2015),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정책목표 및 수단 등과 같은 정책의 핵심적 내용에 충족하는 조건이 동시에 추진되어 효율성 및 실효성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수평적 정합성과 수직적 정합성으로 바라본다. 수평적 정합성은 지속가능발전이 분야별 목표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방식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며 수직적 정합성은 국가의 정책계획이 국제적 합의·협의와 부합하는지, 또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상응하는 방식인지를 판단한다.

제2절 국내외 유사부합성 사례

1. 국내 사례

국내 사례를 조사하면서 평가결과 작성에 있어 제도별 4가지 평가방법으로 분류하여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누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등급 및 점수화를 통한 등급법 및 점수법이다.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YES와 NO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상세한 판단근거와 함께

서술식으로 작성한 방법이다.

가. 평가 방법 A. ‘높음’, ‘보통’, ‘낮음’

부합성 여부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평가하는 제도로는 KISTEP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다. KISTEP 예비타당성조사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본 평가방법은「국가재정법」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 및「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정부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 대상선정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표 2-2〉「국가재정법」제38조 및「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구분	장점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구분	장점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검색일: 2022.5.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는 〈그림 2-1〉과 같이 예비타당성 대상이 선정되면 사업별 PM(Project Manager) 등 연구진을 구성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을 결정한 후 부처의 사업설명 및 쟁점토론을 포함한 다수의 자문회의 및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회의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당 사업 검토자와 KISTEP 등이 질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분석 결과(안)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사업별 PM 등으로 구성된 종합평가위원회가 종합결과(AHP)를 도출하여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결과가 확정·통보되어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게재된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 KISTEP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세가지 타당성 분석 중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가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국가계획에 제시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조사대상 사업의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표 2-3〉과 같이 필수 계획과 선택군 계획 부합성 여부 검토 후 각각의 선택군 계획별 부합도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평가한다.

〈표 2-3〉 정책성 타당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작성 예시

구분	계획명	부합도		
		낮음	보통	높음
필수 계획	(필수 계획명)			V
선택군 계획	(선택군 계획명1)		V	
	(선택군 계획명2)			V

자료: KISTEP(2016).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 해당 대상사업간 부합도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종합분석에 참고하고자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정리한다.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표 2-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필수계획 / 선택군 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자료: KISTEP(2016).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나. 평가 방법 B. 등급 및 점수화

등급 및 점수화하는 방안 모두 매트릭스 방식으로서 세부 평가기준별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급법과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직접 기입하는 점수법으로 나뉜다. 이러한 방안을 사용하는 사례로 국토계획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며 국토계획평가의 경우 작성자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등급법이 사용된다.

1) 국토계획평가제도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초기부터 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 2~4에 근거하여(부록1 참조) 대상, 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요청서 작성과 제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정하게 되며, 법에 규정된 평가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토대로 계획수립권자가 계획(안)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보완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계획의 효과나 성과가 아닌 수립 중인 계획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평가'이며, 계획수립 초기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자체적 평가'에 해당되고,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이라는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평가'의 역할을 하며, 계획수립권자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이에 국토계획평가를 받는 대상 계획의 경우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미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기간 5년 이상인 중·장기 계획이다. 크게 종합·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된다.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제출은 계획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해당 계획의 관계기관 협의 시 또는 해당 계획수립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서를 제출받아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요 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중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 및 개최한다.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추가 검토를 받아 결정된 세부평가기준 범위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국토연구원은 작성된 요청서 초안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가 끝난 초안은 계획수립권자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제출된 요청서는 국토연구원과 환경부에서 30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어야 하며 단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추가 기간 동안 검토가 완료된다. 이후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심의가 끝난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

부가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계획수립권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조치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필요할 경우 계획 간의 조정 요청이 이루어지고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이 함께 이를 수행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부터 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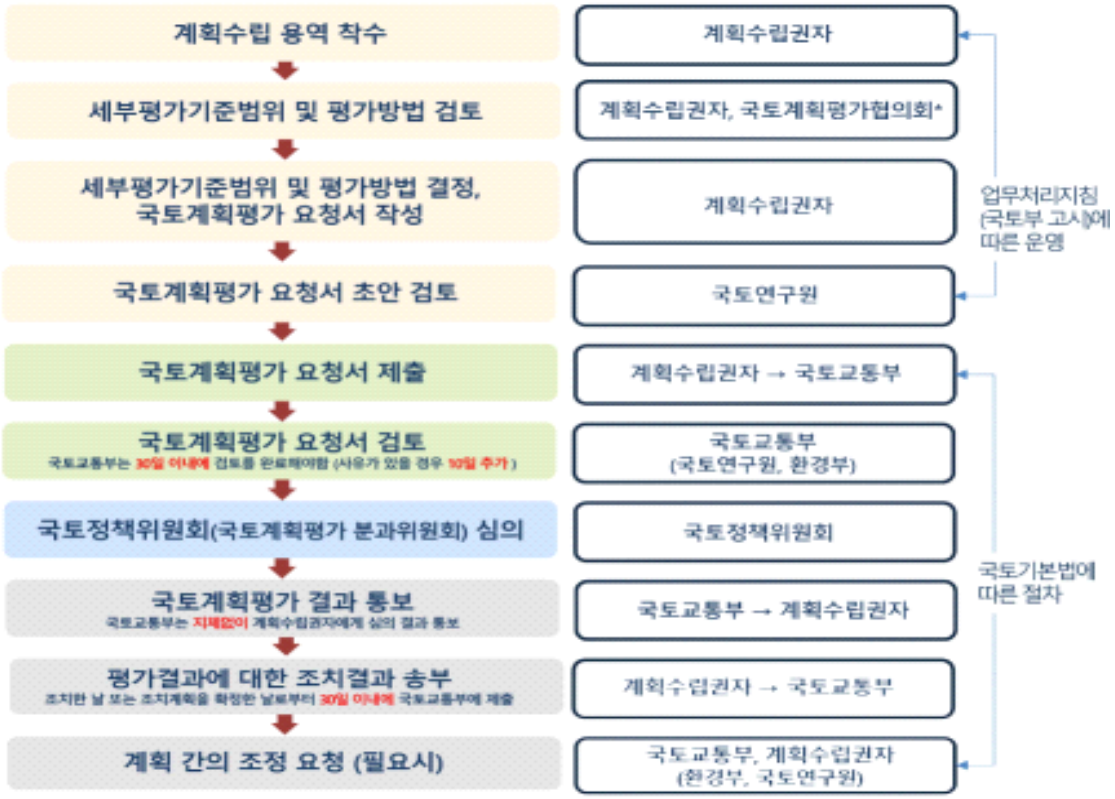

자료: 국가물관리위원회(2021). 재인용

〈그림 2-2〉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안을 설정·분석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를 법

적근거로 하여 수행된다. 해당 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환경영향조사로 구분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계획 확정 후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의 지연 혹은 취소로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를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의 단계에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사전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과 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표 2-5〉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구분	정책계획 세부 평가항목
부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예.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연계성 일관성	-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 관련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계획 목표와 계획 세부내용의 일관성
적정성 지속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자료: 국가물관리위원회(2021). 재인용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계획수립권자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계획이 다른 계획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결정되면 계획수립권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

구 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결정내용을 공개한다.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공개해야하며 이후 계획수립권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검토·협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45일 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및 검토전문기관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심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하며, 계획수립권자는 해당 의견을 반영 또는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다시 환경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자료: 한국환경연구원(2021).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대상) 절차

3) 국토계획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

국토환경평가제도는 총 6단계의 등급(√√, √, √/×, ×, ××, •) 혹은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 중 작성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

우 총 5단계의 등급(◎, ○, •, ×, ××)으로 평가한다.

〈표 2-6〉 국토계획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급화 및 점수화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급화	6단계의 등급으로 분류 (√√, √, √/×, ×, ××, •)	5단계의 등급으로 분류 ◎:강한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중립적·혼합적이며 불명확한 영향 ×:부정적 영향 ××:강한 부정적 영향
점수화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직접 기입	-

자료 : 저자 작성

다. 평가 방법 C. 체크리스트(YES/NO)

세부 항목기준을 질문으로 만들어 체크리스트를 통해 YES 또는 NO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평가하는 제도로는 앞서 언급되었던 국토계획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당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은 상하위계획 간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표 2-7〉 국토계획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방법	‘Yes’, ‘No’	‘예’, ‘아니오’, ‘불확실’
평가 항목	‘환경성 검토’와 ‘국토종합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시 사용 (계획내용이 특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가범위도 명확하여 ‘Yes/No’ 형태로 평가 가능한 경우)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또는 연계성·일관성, 적정성 여부 분석· 평가 시 사용

자료 : 국토연구원(2021).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환경부(202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평가 방법 D. 서술식

국회 예산안 심의 제도는 헌법 제54조[2]와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2)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부록2 참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확정하는 과정이다.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또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자료 : 물관리위원회지원단(2021.12),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계획(안)」

〈그림 2-4〉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및 수행 주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상정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17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마련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종합심사 과정을 거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부처별 사업을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마련한 심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에 의해 공고된다.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의 경우 정량적 판단근거를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부처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작성 예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총괄 검토의견 작성 예시
가. 경제여건 변동 검토
최근 경제지표의 변동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석에 따라 IMF 외환위기와도 비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국내총생산(GDP) 변동을 살펴보면 2020년 실질성장률은 △1.0%로서 2019년 2.0% 대비 △3.0%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표면상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13.0%p(1996년 7.9% → 1998년 △5.1%)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5.0%p(2007년 5.8% → 2009년 0.8%)보다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정량적 판단근거 제시**
나. 재정대응 규모 검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정대응 규모는 GDP 차이를 고려할 때 주요국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며, 특히 지출확대 · 조세감면 등 직접적 재정지출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재정대응(Fiscal Policy Response)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우리나라는 13.6%로서 미국(19.1%), 프랑스(23.5%), 영국(32.4%) 등 주요국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저개발국까지 포함된 세계 평균(13.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정량적 판단근거 제시**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심사보고서는 심의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이며 예산안 작성의 특성상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의 결과는 정량적 판단근거를 포함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금액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해 서술식으로 작성된다.

2. 국외 사례

가. 평가 방법 A.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보고서 작성 시 평가 방법으로 ‘매우 높음(Very High)’, ‘높음(High)’, ‘보통(Medium)’, ‘낮음(Low)’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글로벌변화연구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이하 “USGCRP”)은 「글로벌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4년마다 미국 전 지역을 범위로 하여 각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작성한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총 4차까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5차 NCA를 진행 중으로 2023년 제5차 NCA(NCA5) 평가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 발간된 제4차 NCA 보고서(NCA4)는 총 2권[3]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기후과학 특별 보고서(The Climate Science Special Report, CSSR)로서 기후변화가 미국 전역의 날씨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제2권은 분야별·지역별 지구 변화의 영향 및 사회적·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응과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NCA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자료의 평가 기준(신뢰도 평가)을 보고서에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해당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제4차 NCA 보고서의 제1권을 장별로 살펴보면, 중요 발견(근거)를 앞부분에 먼저 요약 서술하는데 이때 각 현상 및 영향별 4단계의 평가 기준 중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문장 뒤에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3) NCA4 제1권(Climate Science Special Report: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4), Volume I), NCA4 제2권(NCA4 II: Impacts, Risks, and Adaptation in the United States)

〈표 2-9〉 제4차 NCA 평가보고서의 평가 기준

구분(Confidence Level)	평가 기준
매우 높음(Very High)	명확한 근거(정설, 일관된 결과, 자료 및 방법, 조치. 결과의 증거가 있는 경우) : 높은 일치
높음(High)	적당한 근거(몇 가지 출처, 약간의 일관성, 방법 다양성 and/or 제한된 자료 등) : 중간 정도의 일치
중간(Medium)	연상시키는 근거(약간의 출처, 제한된 일관성, 불완전한 모델 등)
낮음(Low)	결정적이지 않은 근거(제한된 출처, 추정치, 일관성 없는 결과, 불충분한 문서 and/or 테스트 되지 않은 방법 등) : 전문가들 사이 의견 불일치 또는 의견의 부족

자료 : USGCRP(2017).「Climate Science Special Report: Fourth Natinal Climate Assessment (NCA4), Volume I」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평가 방법 B. 등급 및 점수화

정책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등급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사례로는 M Scobie(2015)가 카리브해 군서도서개발도상국(이하 “SIDS[4]”)의 기후 거버넌스 정책 부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SIDS는 기후로 인한 영향의 취약성이 가장 크지만, 기후 위기로부터 해당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 인프라 등과 같은 자원이 적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후정책 일관성 및 통합된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 통합된 기후정책을 통해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여 재정적 지원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을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도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도서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중 개발도상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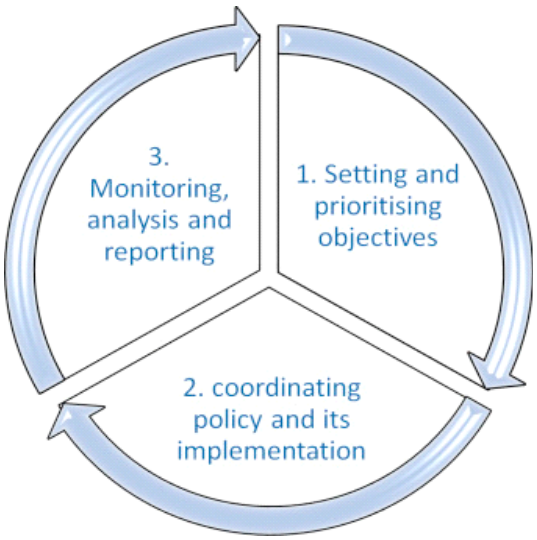

자료 : M Scobie(2015). 「Policy coherence in climate governance in Caribbea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Framework for climate policy coherence

M Scobie(2015)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기후 정책 일관성 및 정책 통합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지역의 정책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①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지정', '②정책 조정 및 구현', '③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의 총 세 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 정책부합성을 평가하며 하나의 질문당 1~5로 등급화(점수화)하였다. 등급(점수)는 총 3개로 분류되었으며 '1-2', '3-4', '5' 중 '5'가 가장 높은 등급(점수)이고 한눈에 파악하고자 색으로 분류해 표시하였다.

〈표 2-10〉 평가 시 등급 및 점수 기준

자료 분석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	등급 및 점수(기준)
충분히 언급된 경우	5 (해당 지표에 대한 우수한 노력, 조치. 결과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일반적 언급은 있지만 행동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경우	3-4 (몇가지 노력, 조치, 결과의 증거가 있지만 지표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행은 없는 경우)
특정한 언급이 없는 경우	1-2 (해당 지표에 대한 노력, 조치, 결과의 증거가 없는 경우

자료 : M Scobie(2015). 「Policy coherence in climate governance in Caribbea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카리브해 국가들의 지역 기후정책 노력을 반영하는 정책 및 계획 4가지를 안내하였다. 이는 'CARICOM[5]의 2015-2019 카리브 지역을 위한 전략계획(Strategic plan, SP) : CARICOM 재포지셔닝(2014)', '릴리엔달 선언(2009년)', '기후변화 탄력적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프레임워크(2009년 7월)',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 IP) : 기후변화 탄력적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CARICOM 지역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혁신적 변화 제공(2012년 3월)'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책부합성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전략계획(SP)과 실행계획(IP)을 제시하여 카리브해 기후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앞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화 및 점수화하였다. 프레임워크 단계별 평가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단계별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표 2-11〉 Climate policy coherence in Caribbean SIDS

	전략 계획	실행 계획
1단계.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지정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보건, 교육, 물, 토지 사용, 민간 부문 및 산업, 농업, 관광)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는가		
세계 및 지역 기후변화 우선순위와 규범 간 충돌이 확인되고 해결되었는가		
부문 간 영향이 상충되는 우선 순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가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시간제한 목표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기후정책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구가 가능하고 정책 수립당시 사용되었는가		
2단계. 정책 조정 및 구현		
정책 구현을 위해 규모, 부문, 정부 및 부서에 걸친 협업 과정이 있는가		
정책 조정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논의를 장려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지식공유를 위한 참여형 플랫폼이 있는가		
3단계.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모니터링 툴이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과 지표가 있는가		
분석: 지역 규모에서 시행자가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설계인가		
정책의 지속적 관련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데이터와 기후 예측을 정책에 연결하는 프로세스인가		

자료 : M Scobie(2015). 「Policy coherence in climate governance in Caribbea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와 접한 국가들의 지역 공동체를 말하며 단일 시장(common market) 형성을 통한 회원국 간 경제통합과 대외정책 조율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

다. 평가 방법 C. 체크리스트(YES/NO)

국내사례를 통한 평가방법을 알아보면서 언급된 체크리스트(Yes/No)를 통해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로서 'OEC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이하 "PCSD")이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간 시너지효과를 내며 상호 보완해나가는 정책 조정 과정을 의미하며(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0) SDGs 세부목표 17.14[6]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CD)의 개념이 SDG 맥락에서 확장된 것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간 참여와 협력을 통한 OECD 회원국들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강화의 중요성 강조와 정책 간 시너지 구축을 통해 통합적 SDGs의 이행을 위한 방법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보다 효과적인 SDGs의 이행을 위해 OECD 이사회는 3대 주제와 8대 원칙을 발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PCSD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3대 주제와 8대 원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낸 것이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 2-12〉와 같다.

자료 : OECD(2019). 「Recommend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림 2-6〉 3대 주제 및 8대 원칙

6) PCSD 제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표 2-12〉 3대 주제 및 8대 원칙 세부 내용

3대 주제	8대 원칙	
SDGs를 통합적·일관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	정치적공약과 리더십	최고위급 정치인의 전정부적 PCSD 배양을 위한 포용적인 정치적 공약과 리더십
	전략적 비전	SDGs와 PCSD 달성을 위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비전
	정책 통합	각 부문간, 국내외 정책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간 연계 및 통합
정책간 상호작용을 위한 효율적·포용적 제도 및 거버넌스 마련	전정부적 조정 체계	각 부문간, 국내외 정책 간 비일관성을 발견하고 완화시키는 전정부적 조정 체계 확립
	지방정부 참여	지방정부와 관계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의 매 단계별 이해관계자를 참여하게끔 하고, 특히 소외·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 아웃리치
정책의 영향도를 분석 측정 소통하는 정교하고 민감한 도구 강화	정책과 자금조달간 긍·부정적 영향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 및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하는 체계
	정책의 분석, 관찰 및 평가	정책의 영향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량적·정성적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시스템

자료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2020). 「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권고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첫 번째 주제인 통합적·일관적 방법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수립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정책 통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강조한다. OECD는 권고사항과 함께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3대 주제 및 8대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질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PCSD의 국가별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다. PCSD에 대한 구체적 지표는 UNEP과 OECD가 함께 개발 중으로 이미 발표된 체크리스트가 실제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 통합'은 8대 원칙 중 3번째 원칙으로서 계획간 목표 및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 통합을 위한 지침,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3〉 OECD PCSD 체크리스트 예시

3.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	
• 개별 부처의 정책과 분야 계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는 지침이 있는가?	□
• 새로운 법안 및 규정 제정 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혹은 제도가 있는가?	□
• 일반적 정부 활동(기획, 예산 등)에 SDGs가 통합되어 있는가?	□
•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가?	□

자료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2020). 「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권고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OECD(2020). 「SELF-ASSESSMENT」.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밖에도 8대 원칙에서 정책 간 비일관성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와의 정책일관성을 조율 및 강화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OECD PCSD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사항으로서 자가 평가를 통해 정책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책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포괄성, 통합성, 보편성이라는 SDGs의 특성을 반영하고 SDGs 이행을 위해 'Yes/No' 방식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활성화하고자 글로벌 SDGs 거버넌스 허브 플랫폼을 활용하여 PCSD 자가 평가를 지원하고 심층 평가, 정책대화 및 상호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PCSD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공유하고 있다.

제3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조사 결과 시사점

1. 제도 분석 결과

가. 국내 부합성 평가 방안

국내 심의 및 검토 제도별 평가방법은 ①'높음, 보통, 낮음'으로 정성적으로 표시한 방법과 ②등급 및 점수화한 방법, ③체크리스트를 통해 YES/NO로 표시한 방법, ④결과 및 판단 근거를 서술식으로 작성한 방법으로 총 4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사례 중 '높음, 보통, 낮음'으로 평가하는 제도로는 KISTEP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평가이다. 예비타당성 대상선정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별 연구진을 구성하고 다수의 자문회의 및 점검회의를 통해 종합결과를 도출하여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다.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 정책성 타당성 판단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가 있으며 국가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대상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한다. 이때 두 계획간의 부합여부를 '높음, 보통, 낮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분석에 활용한다.

등급 및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제도와 체크리스트(YES/NO)로 평가하는 제도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미래 장기발전 방향 제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기간 5년 이상인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수립초기부터 계획수립권

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이는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함이다.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다. 전략영향환경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네 종류 중 하나이며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세부평가항목 중 부합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과의 부합하는가 또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조약·규범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가를 평가한다.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타 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결정되면 대상 계획수립권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진다. 심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국토계획평가의 경우 총 6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화 및 0~100점의 사이의 점수를 직접 기입하는 점수화를 통한 방식을 사용하며 작성자가 선택하여 작성한다.

체크리스트(YES/NO)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국토종합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시 사용하며 특정 부분에 계획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YES/NO로 평가가능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총 5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등급화를 통한 방식을 사용한다. 체크리스트(YES/NO)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일관성 등 평가시 사용한다.

서술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로는 국회 예산안 심의 제도가 있으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확정하는 제도이다. 심의·의결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공고된다. 심사·검토보고서의 경우 정량적 판단근거를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국외 부합성 평가 방안

국외 검토 제도별 평가방법을 ①'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으로 표시한 방법과 ②등급 및 점수화한 방법, ③체크리스트를 통해 YES/NO로 표시한 방법으로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사례를 검토하였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으로 평가하는 제도로는 미국의 국가기후평가가 있으며, 4년마다 미국 전 지역의 각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근거가 명확할수록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며 추정 혹은 일관성이 없거나 불충분한 근거일 경우 낮음으로 평가한다. 등급화 및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제도로는 M Scobie의 SIDS 기후 거버넌스의 정책 부합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있으며 카리브해 지역의 정책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3단계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각 단계별 질문을 통해 정책부합성을 평가한다. 하나의 질문당 1~5로 등급화 하였으며 등급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색으로 표시한다. 체크리스트(YES/NO)로 평가하는 제도에는 OECD PCSD가 있으며, 이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간 상호보완해나가는 정책 조정 과정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OECD 이사회에서 발표한 3대 주제와 8대 원칙 중 정책통합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질문을 통해 국가별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2. 시사점

국내외 부합성 심의 및 평가 제도를 조사한 결과 평가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①상하계획간 목표와 수단의 일치성(consistency)을 판단하거나 ②일관성 및 상호연계성(congruence)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판단근거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로 위임하거나 아니면 모든 항목에 객관적인 값을 제시하여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일치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상위계획의 추진방향이나 세부 내용을 일부 반영 못 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다. 또한 일관성 및 상호연계성의 경우는 총괄적으로 일관성 있는 판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가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일치성을 중심으로 상위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 추진하고 있는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는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는 제도 초기이고 부합성 대상 계획들의 수립시 개별적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이미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국가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상계획들이 국가계획과 같이 물관련 전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제한된 부문별 계획이기 때문에 수평적 정합성보다는 수직적 정합성에 근거하여 계획의 유사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소극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소극적 판단을 통해 계획들마다 특성과 주요 판단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적정 수준을 도출하는 단계별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위주의 부합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부합성의 표현의 방식도 현재의 경우와 같이 정성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적합”, “부적합” 등에서 시작해서 “매우높은”, “높음”, “낮음” 등의 정도로 확대되고 보다 고도화 되어서 등급이나 점수화로 최종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예비검토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적 표현 등으로 원인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담당자들이 종합 검토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

제3장

부합성 예비검토 사례

- 제1절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및 대상계획
- 제2절 부합성 예비검토 이행계획
- 제3절 시사점 및 개선점

제3장 부합성 예비검토 사례

제1절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및 대상계획

가.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부합성 예비검토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다수 계획을 짧은 기간내에 충실히 검토하고 검토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단계로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 계획별로 일정이나 검토내용, 시급성에 맞추어 진행할 수가 있다.

1단계,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계획수립기관의 부합성 심의요청서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에 예비검토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에게 부합성 사전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항을 알리고 해당 계획 등 검토대상 계획 관련 정보와 기초자료 및 검토 추진 일정을 사전에 논의한다. 사전공지가 됨에 따라 지원기관은 관련 예비 전문기관(“전문기관”)에 해당 정보를 알리고 전문기관이 수행할 절차와 내용 그리고 해당 계획의 주요 검토사항, 검토담당자의 선정을 통해 약 3~4일 동안 사전 스크리닝을 수행한다. 이때, 전문검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 검토담당자를 사전에 지정 및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	주체	소요기간(합계)
대상계획 사전검토 요청	지원단 → 예비검토 지원기관	신청전
대상계획 검토 사전 스크리닝	예비검토 지원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	3~4일 (+3일)
예비검토 사전회의	예비검토 지원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	6~7일 (+7일)
예비검토 요청	지원단 → 예비검토지원·전문기관	사전회의 후 즉시
예비검토 수행	예비검토 지원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	10일(10일)
전문검토보고서 작성	예비검토 지원기관	3~4일 (13~14일)
전문검토보고서 제출	예비검토 지원기관 → 지원단	4일(14일)

자료: 저자작성

〈그림 3-1〉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2단계,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예비검토를 수행하기 전 사전회의를 진행한다. 이때 지원기관이 주관하여 부합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설명, 관련양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전달,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이행함으로써 전문기관 검토자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예비검토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한다. 기관별 담당자의 참석 가능 여부와 추가 설명 필요도에 따라 1~2회 추가 개최될 수 있다.

3단계, 사전회의 후 즉시 지원기관은 지원단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해당 전문기관으로 '부합성 평가의 계획요소 분류표', '부합성 전문검토보고서 양식'을 포함하여 예비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4단계, 전문기관은 10일 이내의 검토기간 동안 작성방법 가이드라인(부록 4)을 참조하여 해당양식에 예비검토와 함께 전문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지원기관은 각 전문기관이 정해진 기간내 부합성 전문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하고 기관별 송부일을 확인하여 보고서 취합 및 종합의견 작성을 위한 일정을 조율한다.

5단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은 약 3~4일간 취합 및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취합 시 오류 및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6단계, 종합보고서에 대한 지원·전문기관간 의견 수렴 및 최종 점검이 마무리되면 부합성 전문검토보고서의 최종본을 지원단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7단계, 최종 부합성 전문검토보고서에 대한 지원단의 보완 또는 문의 사항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반영결과에 대해 지원단에 송부한다.

나. 부합성 예비검토 이행계획

본 과업 기간내 완료된 부합성 예비검토는 해당 절차를 걸쳐 총 6건의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전체 심의 대상 계획(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건, 국가수도기본계획, 유역계획 4건으로 총 10건이었으나 심의 접수 및 보완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4건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향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중심으로 부합성 예비검토를 수행하였다.

제2절 부합성 예비검토 이행계획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하수도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유역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수역 수질기준을 달성하고 공공하수도의 합리적 시설계획과 운영·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운영비 절감,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경제적 방안 도출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20년 단위 계획이다. 하수도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해야 하며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예정 대상은 한강권역 9건, 낙동강권역 8건, 금강권역 6건, 영산강권역 3건, 섬진강권역 3건으로 총 29건이다. 다만, 심의 대상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근거가 되는 「하수도법」 제4조의2는 다음과 같다.

〈표 3-1〉「하수도법」 제4조의2

구분	내용
제1항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 · 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제3항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4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관계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관계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구분	내용
제6항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검색일: 2022.5.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중 총 5건을 진행하였으며, 낙동강중류, 서해남부, 팔당댐상류, 용담댐, 섬진강상류 순으로 예비검토를 진행하였다. 대상 계획의 계획수립권자 및 담당부서, 검토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3-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구분	계획명	계획수립권자	담당부서	검토기관
1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구지방환경청장	기획재정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2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총량관리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3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4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북지방환경청장	환경관리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5	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북지방환경청장	환경관리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나. 부합성 심의 요청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는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에는 2016년에 수립된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 단위유역의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라는 대상 계획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O/X/-'로 표시하여 계획 요소별 부합여부 결과를 나타내었다. 11개의 계획요소 중 5개 항목을 부합(O)으로, 기타를 포함한 6개 항목을 해당없음(-, 관련내용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의견에서는 오염원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과 관련하여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 제시,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자료 검토를 통한 개량계획 수립,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통합운영체계 의견 수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실시, 하수도 시설계획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 발생 방지 등의 본 계획에 대한 부합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일부 부합한다는 종합적 결과를 함께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에서는 수립 기관(대구지방환경청)과 시간적범위(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범위(낙동강 중류 단위유역으로 감천, 낙동왜관, 낙동구미, 위천 중권역), 내용적 범위(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방류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등)를 포함하고 계획의 목차를 보여줌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계획의 수립 흐름도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절차를 작성하였다.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에는 '종합평가'와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에서 11개 계획요소별 국가계획에 따른 심의 대상 계획의 해당되는 내용과 쪽수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근거 및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계획요소별 간략히 서술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합함/부합하지 않음/해당없음'을 부합 판단 근거와 함께 명시하였다.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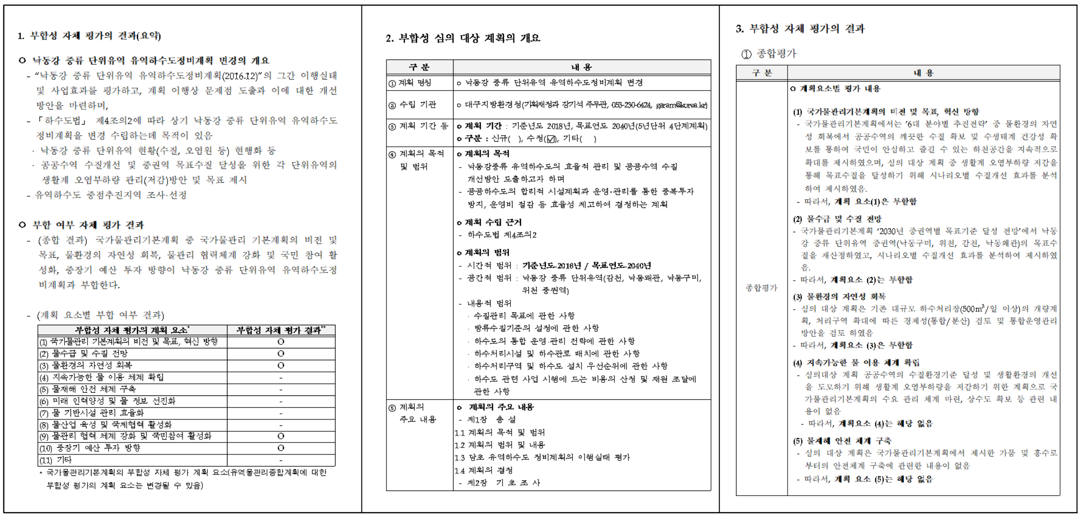

1.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ㅇ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의 개요

-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2016.12)"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계획 이행상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상기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현황(수질, 오염원 등) 현행화 등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 단위유역의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
-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조사·선정

ㅇ 부합 여부 자체 평가 결과

- (종합 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물관리 협력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이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부합한다.
- (계획 요소별 부합 여부 결과)

부합성 자체 평가의 계획 요소*	부합성 자체 평가 결과**
(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O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O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O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O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O
(11) 기타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부합성 자체 평가 계획 요소(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부합성 평가의 계획 요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① 계획 명칭	ㅇ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② 수립 기관	ㅇ 대구지방환경청(기획재정과 강기석 주무관, 053-230-6424, garam@korea.kr)
③ 계획 기간 등	ㅇ **계획 기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40년(5년단위 4단계계획) ㅇ **구분** : 신규( ), 수정(☑), 기타( )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ㅇ **계획의 목적** -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하며 - 공공하수도의 합리적 시설계획과 운영·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하여 결정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근거** - 하수도법 제4조의2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18년 / 목표연도-2040년** - 공간적 범위 :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감천, 낙동왜관, 낙동구미, 위천 중권역) - 내용적 범위 ·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방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⑤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 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1.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1.3 당초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1.4 계획의 결정 - 제2장 기 초 조 사

3.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①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종합평가	ㅇ **계획요소별 평가 내용**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6대 분야별 추진전략' 중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에서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심의 대상 계획 중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따라서, **계획 요소(1)은 부합함**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30년 중권역별 목표기준 달성 전망'에서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중권역(낙동구미, 위천, 감천, 낙동왜관)의 목표수질을 재산정하였고,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따라서, **계획요소 (2)는 부합함**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심의 대상 계획은 기존 대규모 하수처리장(500m³/일 이상)의 개량계획,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성(통합/분산) 검토 및 통합운영관리 방안을 검토 하였음 - 따라서, **계획요소 (3)은 부합함**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심의대상 계획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요 관리 체계 마련, 상수도 확보 등 관련 내용이 없음 - 따라서, **계획요소 (4)는 해당 없음**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 심의 대상 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뭄 및 홍수로부터의 안전체계 구축에 관련한 내용이 없음 - 따라서, **계획 요소 (5)는 해당 없음**

자료 : 대구지방환경청(2022). 부합성 심의 요청서(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그림 3-2〉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2)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에는 2016년에 수립된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행화 및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제시라는 대상 계획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O/X/-’로 표시하여 계획 요소별 부합여부 결과를 나타내었다. 11개의 계획요소 중 4개 항목을 부합(O)으로, 기타를 포함한 7개 항목을 해당없음(-, 관련내용없음)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간략히 작성하였다. 종합의견에서는 오염원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과 관련하여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 제시,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자료 검토를 통한 개량계획 수립,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통합운영체계 의견 수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실시, 하수도 시설계획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 발생 방지 등의 본 계획에 대한 부합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일부 부합한다는 종합적 결과를 함께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에서는 수립 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과 시간적범위(기준년도 2018년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범위(서해남부 4개 중권역으로 와탄천, 신안군, 영암방조제, 진도 중권역), 내용적 범위(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질조사 및 수질분석 모델링, 공정모델링, 성과품 작성 각 1식)를 포함하고 계획의 목차를 보여줌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계획의 수립 흐름도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절차를 작성하였다.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에는 '종합평가'와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에서 11개 계획요소별 국가계획에 따른 심의 대상 계획의 해당되는 내용과 쪽수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근거 및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계획요소별 간략히 서술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합함/부합하지 않음/해당없음'을 부합 판단 근거와 함께 명시하였다.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의 개요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2016.7)"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계획 이행상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상기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서해남부 단위유역 현황(수질, 오염원 등) 현행화 등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 단위유역의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
-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조사·선정

○ 부합 여부 자체 평가 결과

- (종합 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물관리 협력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이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부합한다.
- (계획 요소별 부합 여부 결과)

부합성 자체 평가의 계획 요소*	부합성 자체 평가 결과**
(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O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O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O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O
(11) 기타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부합성 자체 평가 계획 요소(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부합성 평가의 계획 요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① 계획 명칭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② 수립 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노시민 팀장, 062-410-5371, nsm3@korea.kr)*
③ 계획 기간 등	○ **계획 기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40년(5년단위 4단계계획) ○ **구분** : 신규( ), 수정(☑), 기타( )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 - 서해남부 단위유역의 중권역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배치,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계획 ○ **계획 수립 근거** - 하수도법 제4조의2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18년 / 목표연도-2040년** - 공간적 범위 : 서해남부 4개 중권역(와탄천, 신안군, 영암방조제, 진도 중권역) - 내용적 범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1식, 수질조사 및 수질분석 모델링 1식, 공정모델링 1식, 성과품 작성 1식
⑤ 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 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1.2 당초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이행실태 확인사항 1.3 계획의 수립 - 제2장 기초 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2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2.3 공공수역에 대한 조사 2.4 부하량에 관한 조사

3.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①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종합평가	○ **총괄**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중권역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임 - 계획의 요소 중 (1)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9)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이 부합하며, - (2)물수급 및 수질 전망, (4)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5)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6)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7)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8)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부분은 해당 없음 - 따라서 서해남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일부 부합함** ○ **계획요소별 평가 내용**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대 분야별 추진전략' 중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 계획에서는 중권역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증감 및 삭감이 반영된 부하량에 각 시나리오별 계획을 적용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따라서, **계획 요소(1)은 부합함**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30년 중권역별 목표기준 달성 전망'에서 영산강 중권역 8개소는 영산강상류, 황룡강, 지석천, 죽산보, 고막원천, 영산강하류, 영암천, 영산강하구언 중권역으로 심의 대상의 중권역(와탄천, 신안군, 영암방조제, 진도)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계획요소 (2)는 해당 없음**

자료 : 영산강유역환경청(2022). 부합성 심의 요청서(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그림 3-3〉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3)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에는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효과적 방안 도출과 관리방안 및 목표 제시를 통해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 평가와 공공하수도 문제점 개선이라는 본 계획의 변경 수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O/X/-'로 표시하여 계획 요소별 부합여부 결과를 나타내었다. 11개의 계획요소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한 총 10개의 항목을 부합(O)으로, 기타 항목을 해당없음(-, 관련내용없음)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부합한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간략히 작성하였다. 종합의견에서는 오염원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과 관련해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 제시,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기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강화를 통해 유역단위 수질개선 효과 제고, 지자체 협의를 통한 시설 운영·관리 개선 및 하수도 관리 효율성 향상 확보,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운영체계 관련 방안 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한 경제성검토 실시 등의 본 계획에 대한 부합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부합한다는 종합적 결과를 함께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에서는 수립 기관(한강유역환경청)과 시간적범위(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범위(팔당댐상류 3개 중권역으로 경안천, 남한강하류, 팔당댐 중권역), 내용적 범위(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조사 및 수질분석 모델링, 하수처리시설 공정 모델링, 성과품 작성 각 1식)를 포함하고 계획의 목차를 통해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어서 계획의 수립 절차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절차를 작성하였다.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에는 '종합평가'와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에서 11개 계획요소별 국가계획에 따른 심의 대상 계획의 해당되는 내용과 쪽수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근거 및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계획요소별 간략히 서술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합함/부합하지 않음/해당없음'을 부합 판단 근거와 함께 명시하였다.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다.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사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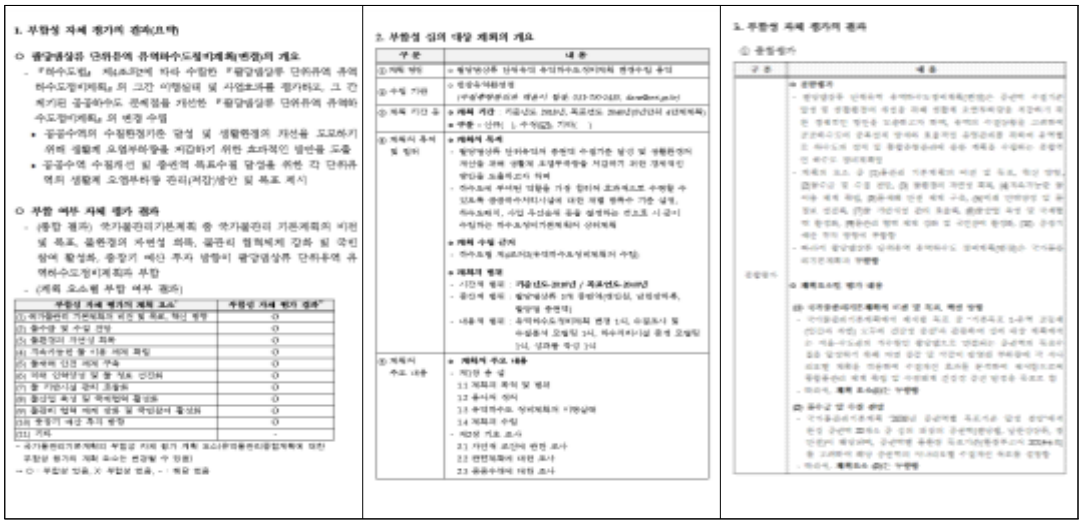

자료 : 한강유역환경청(2022). 부합성 심의 요청서(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그림 3-4〉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4)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에는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 평가와 문제점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조사·선정을 통한 현행화 및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O/X/-'로 표시하여 계획 요소별 부합여부 결과를 나타내었다. 11개의 계획요소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을 부합(O)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간략히 작성하였다. 종합의견에서는 오염원 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과 관련하여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 제시,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자료 검토를 통한 개량계획 수립 및 용담댐 단위유역내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실시, 하수도 시설계획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 발생 방지 등의 본 계획에 대한 부합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부합한다는 종합적 결과를 함께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에서는 수립 기관(전북지방환경청)과 시간적범위(기준년도 2018년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범위(용담댐 단위유역 4개 중권역으로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영동천), 내용적 범위(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질조사 및 수질분석 모델링, 공정모델링, 성과품 작성 각 1식)를 포함하고 계획의 목차를 보여줌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계획의 수립 흐름도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절차를 작성하였다.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에는 '종합평가'와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에서 11개 계획요소별 국가계획에 따른 심의 대상 계획의 해당되는 내용과 쪽수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근거 및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계획요소별 간략히 서술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합함/부합하지 않음/해당없음'을 부합 판단 근거와 함께 명시하였다.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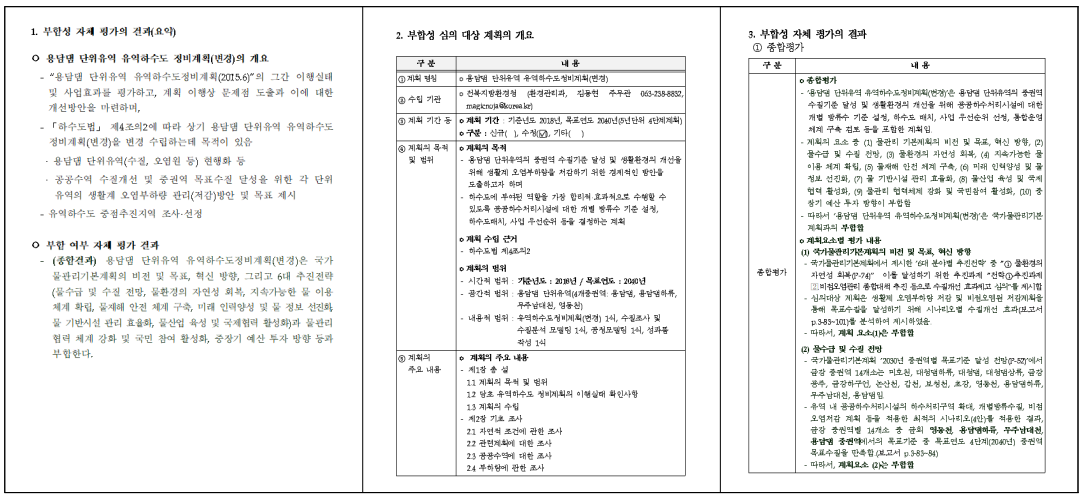

1.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의 개요

-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2015.6)"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계획 이행상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상기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변경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용담댐 단위유역(수질, 오염원 등) 현행화 등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 단위유역의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
-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조사·선정

○ 부합 여부 자체 평가 결과

- **(종합결과)**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그리고 6대 추진전략(물수급 및 수질 전망,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과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등과 부합한다.

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① 계획 명칭	ㅇ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② 수립 기관	ㅇ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김동현 주무관 063-738-8832, magicno18@korea.kr)
③ 계획 기간 등	ㅇ **계획 기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년도: 2040년(6년단위 4단계계획) ㅇ **구분** : 신규( ), 수정(O), 기타( )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ㅇ **계획의 목적** - 용담댐 단위유역의 중권역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계획, 사업 추진순위 등을 결정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근거** - 하수도법 제4조의2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연도 : 2040년** - 공간적 범위 : 용담댐 단위유역(4개중권역: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얼음천) - 내용적 범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1식, 수질조사 및 수질분석 모델링 1식, 공정모델링 1식, 성과품 작성 1식
⑤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 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1.2 당초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이행실태 확인사항 1.3 계획의 수립 - 제2장 기초 조사 2.1 지형적 조건에 관한 조사 2.2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2.3 공공수역에 대한 조사 2.4 부하량에 관한 조사

3.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①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종합평가	ㅇ **종합평가** -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용담댐 단위유역의 중권역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 배치, 사업 추선순위 선정,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임. - 계획의 요소 중 (1) 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 협력 활성화, (9) 물관리 협력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이 부합함 - 따라서 '용담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함** ㅇ **계획요소별 평가 내용**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6대 분야별 추진전략' 중 "①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P.74)"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전략①추진과제 ②비점오염관리 통합대책 추진 등으로 수질개선 효과에고 심각"를 제시함 - 심각대상 계획은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 및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통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보고서 p.3-83~102)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따라서, **계획 요소(1)은 부합함**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30년 중권역별 목표기준 달성 전망(P.52)'에서 금강 중권역 14개소는 미호천, 대청댐하류, 대청댐, 대청댐상류, 금강 본류, 금강하구언, 논산천, 갑천, 보청천, 초강, 영동천,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용담댐임 - 유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개별방류수질, 비점오염저감 계획 등을 적용한 최적의 시나리오(선)를 적용한 결과, 금강 중권역별 14개소 중 금회 **영동천,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용담댐 중권역**에서의 목표기준 중 목표연도 4단계(2040년) 중권역 목표수질을 만족함(보고서 p.3-85~84) - 따라서, **계획요소 (2)은 부합함**

자료 : 전북지방환경청장(2022). 부합성 심의 요청서(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그림 3-5〉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5) 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에는 2015년 수립된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 평가와 계획 이행상 문제점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현행화 및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O/X/-'로 표시하여 계획 요소별 부합여부 결과를 나타내었다. 11개의 계획요소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을 부합(O)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간략히 작성하였다. 종합의견에서는 오염원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과 관련하여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 제시, 시설용량 500m/일 이상인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자료 검토를 통한 개량계획 수립 및 용담댐 단위유역내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실시, 하수도 시설계획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 발생 방지 등의 본 계획에 대한 부합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부합한다는 종합적 결과를 함께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에서는 수립 기관(전북지방환경청)과 시간적범위(기준년도 2018년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범위(섬진강상류 5개 중권역으로 섬진강댐, 섬진강댐하류, 오수천, 순창, 요천 중권역), 내용적 범위(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유량 및 수질조사, 수질모델링 및 공정모델링, 성과품 작성 각 1식)를 포함하고 계획의 목차를 보여줌

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계획의 수립 흐름도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절차를 작성하였다.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에는 '종합평가'와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에서 11개 계획요소별 국가계획에 따른 심의 대상 계획의 해당되는 내용과 쪽수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근거 및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계획요소별 간략히 서술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합함/부합하지 않음/해당없음'을 부합 판단 근거와 함께 명시하였다. 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사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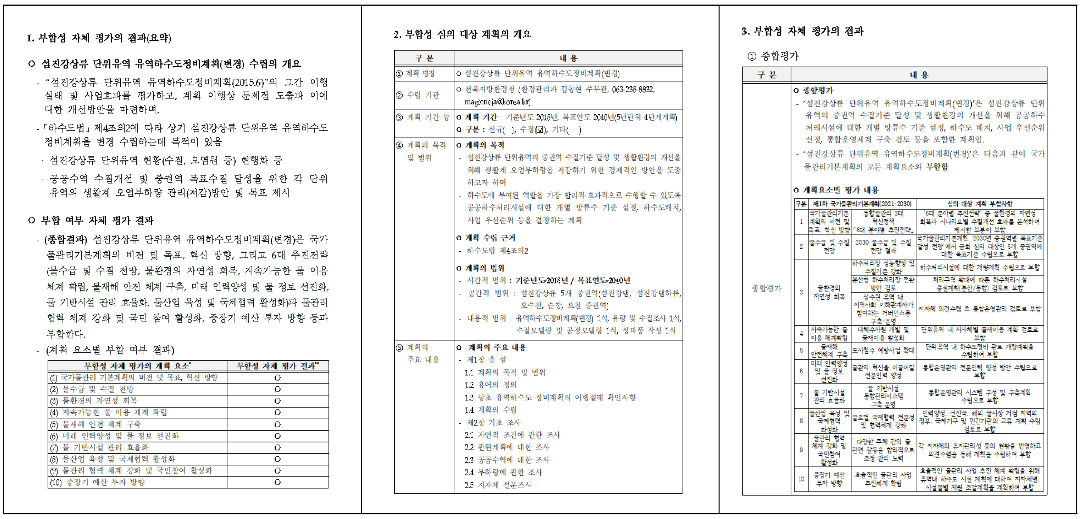

1.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의 개요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2015.6)"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계획 이행상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상기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현황(수질, 오염원 등) 현행화 등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각 단위유역의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방안 및 목표 제시

○ 부합 여부 자체 평가 결과

- (종합결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그리고 6대 추진전략(물수급 및 수질 전망,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과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등과 부합한다.
- (계획 요소별 부합 여부 결과)

부합성 자체 평가의 계획 요소*	부합성 자체 평가 결과**
(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O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O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O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O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O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O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O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O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O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O

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① 계획 명칭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② 수립 기관	○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김동현 주무관, 063-238-8832, magicnoja@korea.kr)
③ 계획 기간 등	○ **계획 기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40년(5년단위 4단계계획) ○ **구분** : 신규( ), 수정(☑), 기타( )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중권역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배치,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계획 ○ **계획 수립 근거** - 하수도법 제4조의2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18년 / 목표연도-2040년** - 공간적 범위 : 섬진강상류 5개 중권역(섬진강댐, 섬진강댐하류, 오수천, 순창, 요천 중권역) - 내용적 범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1식, 유량 및 수질조사 1식, 수질모델링 및 공정모델링 1식, 성과품 작성 1식
⑤ 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 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당초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이행실태 확인사항 1.4 계획의 수립 - 제2장 기초 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2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2.3 공공수역에 대한 조사 2.4 부하량에 관한 조사 2.5 지자체 설문조사

3.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①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종합평가	○ **종합평가**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중권역 수질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 배치, 사업 우선순위 선정, 통합운영체계 구축 검토 등을 포함한 계획임. -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은 다음과 같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모든 계획요소와 **부합함** ○ **계획요소별 평가 내용**

구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 대상 계획 부합사항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6대 분야별 추진전략」	'6대 분야별 추진전략' 중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과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부분이 부합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203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30년 중권역별 목표기준 달성 전망'에서 금회 심의 대상인 5개 중권역에 대한 목표기준 수립으로 부합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하수처리장 성능향상 및 수질기준 강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량계획 수립으로 부합
		분산형 하수처리장 전환 방안 검토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분산/통합) 검토로 부합
		상수원 유역 내 지역사회·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지자체 의견수렴 후 통합운영관리 검토로 부합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확립	대체수자원 개발 및 물재이용 활성화	단위유역 내 지자체별 물재이용 계획 검토로 부합
5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도시침수 예방사업 확대	단위유역 내 하수도정비 관로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부합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물관리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통합운영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안 수립으로 부합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성 및 구축계획 수립으로 부합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글로벌 국제협력 전문성 및 협력체계 강화	인력양성, 선진국, 해외 물시장 거점 지역의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의 교류 계획 수립 검토로 부합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다양한 주체 간의 물 관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노력	각 지자체의 유지관리성 등의 현황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부합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효율적인 물관리 사업 추진체계 확립	효율적인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유역내 하수도 시설 계획에 대하여 지자체별, 시설물별 재원 조달계획을 계획하여 부합

자료 : 전북지방환경청장(2022). 부합성 심의 요청서(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그림 3-6〉 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 심의 요청서

다. 부합성 주요 검토결과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는 종합의견,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붙임자료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자료는 검토기관별 결과 및 근거를 종합해 놓은 계획 요소별 전문 예비검토기관의 검토 내용과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3부(KEI,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각 1부)로 구성되어 있다. KEI, KICT, 과학원 3곳의 전문검토기관이 예비검토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예비검토기관인 KEI가 종합 의견을 작성하여 지원단에 제출하였다.

1)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10개(기타 제외) 중 부합 5개, 미부합 3개, 해당없음 2개의 종합의견이 도출되었다. 계획요소별 예비검토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부합성 평가 결과(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미부합 (부합 0, 미부합 3, 해당없음 0)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미부합 (부합 0, 미부합 2, 해당없음 1)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미부합 (부합 1, 미부합 1, 해당없음 1)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해당없음 (부합 0, 미부합 0, 해당없음 3)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부합 (부합 2, 미부합 0, 해당없음 1)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해당없음 (부합 0, 미부합 0, 해당없음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기타	- (검토 체계 개선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 필요)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문검토기관 3곳(KEI, KICT, 과학원)의 평가 결과 개수를 나타냄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유역 단위의 효과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했으므로 부합함을,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생활계 비점오염원 관리계획·하수처리시설 개량계획·하수도 통합운영 및 관리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음으로 부합함을,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204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개량계획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므로 부합함을,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유역하수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역하수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제시하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

향'은 국가계획의 이행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하수도사업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과 중점추진지역을 제시하므로 부합합으로 평가하였다.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은 대상 계획의 시행 시 2030년까지 단위유역 내 4개 중권역 중 2개 중권역(구미보(BOD, T-P)와 감천(T-P))의 목표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미부합을,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은 국가계획의 대체수자원 관련 내용이 대상 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군 물재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유역 차원의 개략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에 관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수재이용에 관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부합을,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유역 차원의 차집관로 및 오수간선관로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에서 침수대응 시설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부합하다고 판단되나 유역 내 시·군 계획 간의 연계 및 통합관리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와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의 경우 대상 계획은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국가계획보다는 유역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물관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계획 시행에 따른 장래 수질이 중권역 목표기준을 초과하며 차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축산계·토지계 오염원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목표기준 달성계획이 수립 가능하다. 또한 국가계획 추진대책 및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춰 하수재이용 계획 및 침수대응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국가계획과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2)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10개(기타 제외) 중 부합 4개, 미부합 4개, 해당없음 2개의 종합의견이 도출되었다. 계획요소별 예비검토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부합성 평가 결과(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미부합 (부합 0, 미부합 2, 해당없음 1)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미부합 (부합 2, 미부합 1, 해당없음 0)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미부합 (부합 0, 미부합 2, 해당없음 1)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미부합 (부합 1, 미부합 1, 해당없음 1)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해당없음 (부합 0, 미부합 0, 해당없음 3)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부합 (부합 1, 미부합 0, 해당없음 2)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해당없음 (부합 0, 미부합 0, 해당없음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기타	- (검토 체계 개선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 필요)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문검토기관 3곳(KEI, KICT, 과학원)의 평가 결과 개수를 나타냄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유역 단위의 효과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했으므로 부합함을,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국가계획 중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산관리 시행계획은 하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상 계획은 하수처리시설 장기 투자계획과 지하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으로 평가되었다.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지역 간 갈등 소지를 고려하여 하수도시설 통합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하수도 통합운영방안을 제시하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은 국가계획의 이행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하수도사업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은 대상 계획의 시행에 따른 수질 전망(중권역 목표기준 달성도)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차후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대권

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고려하여 목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축산계·토지계 오염원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목표기준 달성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생활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 계획·하수도 통합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은 국가계획에 부합하지만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의 강화 계획이 없어 국가계획의 관련 추진과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부합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유역 내 생활계 오염부하량의 비중이 작아(BOD 13.5%, T-P 4.9%)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강화하더라도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이 불가능해 방류수질 강화의 경제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은 하수재이용에 관한 실행계획은 시·군 물재이용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유역 차원의 개략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에 관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므로 미부합을,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우수관로를 포함한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제시한 부분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침수대응 하수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에서 수립하나, 유역 내 시·군 계획 간의 연계 및 통합관리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와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의 경우 대상 계획은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국가계획보다는 유역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물관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계획 시행에 따른 장래 수질이 중권역 목표기준을 상회하며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차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축산계·토지계 오염원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목표기준 달성계획이 수립 가능하다. 또한 국가계획 추진대책 및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춰 하수재이용 계획 및 침수대응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국가계획과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3)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10개(기타 제외) 중 부합 8개, 미부합 2개의 종합의견이 도출되었다. 계획요소별 예비검토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 부합성 평가 결과(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미부합 (부합 1, 미부합 1, 해당없음 1)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미부합 (부합 1, 미부합 1, 해당없음 1)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부합 (부합 2, 미부합 0, 해당없음 1)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부합 (부합 1, 미부합 0, 해당없음 2)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부합 (부합 2, 미부합 0, 해당없음 1)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부합 (부합 1, 미부합 0, 해당없음 2)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부합 (부합 2, 미부합 0, 해당없음 1)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기타	-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문검토기관 3곳(KEI, KICT, 과학원)의 평가 결과 개수를 나타냄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하수도 관리방안을 제시했으므로 부합함을,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팔당댐 중권역의 T-P 수질항목 목표수질을 미달성하였으나 팔당댐상류(팔당댐, 경안천, 남한강하류) 단위유역에 대해 국가계획의 목표수질에 부합하도록 시나리오별 개선방법 및 효과를 제시하여 대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타 관련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통수능력부족 하수관거의 확률년수 상향 및 용량부족 관로의 관

경확대 등의 정비계획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는 통합물관리 고급인력 양성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연 1회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선제적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와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 통합관리방안과 개량계획·폐쇄계획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하수도 관련 물사업육성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통합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은 국가계획의 이행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하수도사업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국가계획에서 제시한 상수원의 유해물질 및 유해조류의 선제적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부합을,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은 단위유역 차원의 재이용 현황 및 목표량에 대한 사항만 제시하여 재이용량 목표 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확대 등의 구체적 방향 제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국가계획보다는 유역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팔당댐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국가계획과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부합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팔당상수원이라는 유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량 유해물질 및 유해조류의 선제적 관리에 대한 계획과 재이용량 목표 달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보완,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하수도 관련 물정보 선진화 전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 설치·유기성 폐자원 및 소화가스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의 탄소중립형 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였다.

4)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10개(기타 제외) 중 부합 7개, 미부합 1개, 해당없음 2개의 종합의견이 도출되었다. 계획요소별 예비검토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부합성 평가 결과(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부합 (부합 2, 미부합 0, 해당없음 1)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해당없음 (부합 0, 미부합 0, 해당없음 3)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미부합 (부합 1, 미부합 1, 해당없음 1)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해당없음 (부합 0, 미부합 0, 해당없음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부합 (부합 2, 미부합 0, 해당없음 1)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기타	-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문검토기관 3곳(KEI, KICT, 과학원)의 평가 결과 개수를 나타냄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수질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은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검토 및 최적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의 경우 국가목표(’30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타계획(물환경분야) 수립시 연계하여 대책 마련과 물사용량 전망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방류수질 강화 및 생활계 비점오염원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신규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89.4%까지 높여 생활계 배출부하량 삭감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은 시설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재이용 현황 및 지자체별 특성 고려해 하수재이용 목표량을 제시하여 부합함으로 평가하였지만 추후 물공급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유역 차원의 중점관리지역 검토 및 침수대처방

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부합함을,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전략영향평가 대상 사업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협의체 운영방안 및 지자체 의견수렴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은 중장기 하수도사업 투자소요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국가계획의 이행방안에 맞추어 신규 설치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함께 하수처리장 내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204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개량계획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폐쇄계획, 통합운영관리계획, 하수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두었지만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세 계획은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대상 유역내 처리시설은 주로 소규모로 마을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적정관리를 위해 위탁운영관리를 주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위탁운영업체의 목표수질달성과 유지관리 성능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성과지표(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연단위 평가시행 계획을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다.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와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의 경우 대상 계획은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국가계획보다는 유역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물관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용담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국가계획과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부합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하였다. 대상 계획 수립에 따라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물기반 협력체계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상 유역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타 물환경분야 계획 수립과의 연계 대책 마련과 물사용량 전망 제시가 필요하며,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세계획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평가시행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계획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을 위한 물공급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및 유역내 하수도 분야의 중장기적 인력양성, 물산업 육성, 정보화 전략 대응 분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 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10개(기타 제외) 중 부합 8개, 미부합 2개의 종합의견이 도출되었다. 계획요소별 예비검토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7〉 부합성 평가 결과(섬진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미부합 (부합 1, 미부합 2, 해당없음 0)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부합 (부합 1, 미부합 0, 해당없음 2)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부합 (부합 1, 미부합 0, 해당없음 2)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미부합 (부합 , 미부합 2, 해당없음 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기타	-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문검토기관 3곳(KEI, KICT, 과학원)의 평가 결과 개수를 나타냄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유역단위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방안 및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하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제시하였으므로 부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제시하여 부함함으로 평가하였으나 방류수질의 미량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은 처리수 재이용 및 대체 수자원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지자체별 하폐수 재이용 현황과 목표량 검토를 토대로 한 장래 계획수립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을,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 및 우수관로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을,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는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을,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 개량계획 및 폐쇄계획과 하수처리시설의 통합물관리시스템 개발 운영(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을,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물의 재이용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기술 확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은 투자계획·재원 조달계획·소용비용 산정·하수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은 2030년 섬진강권역 BOD 부하량 값이 기본계획과 유역계획이 불일치하며 오수천·요천 중권역의 T-P 목표기준 달성이 불가하여 방류수질 강화 등의 삭감대책이 한계성을 가져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추가의견으로 본 대상 계획은 생활계 오염원에 대한 사항만을 다루므로 차후 유역계획 및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계획 제시 및 형태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으나 국민참여 방안 및 참여 내용이 부재하므로 미부합으로 평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확산을 위한 통합운영관리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합물관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국가수도기본계획 정책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가수도기본계획 시설편'으로 개편되어 수립되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4조는 다음과 같다.

〈표 3-8〉「수도법」 제4조

구분	내용
「수도법」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검색일: 2022.5.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계획수립권자 및 담당부서, 검토기관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획 수립 시 KEI가 참여하였으므로 본 대상 계획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종합의견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문검토기관 2곳(KICT, 과학원)의 의견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 3-9〉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구분	계획명	계획수립권자	담당부서	검토기관
1	국가수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물이용기획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나. 부합성 심의 요청서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는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④국가수도기본계획의 목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에서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및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생동강 넘치는 신뢰받는 수도'를 비전으로 하여 4대 목표·16개 추진전략·44개 이행과제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O/X/-'로 표시하여 계획 요소별 부합여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11개의 계획요소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 모두 부합(O)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는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을 작성하였다. 「수도법」 제4조제1,3,4항(표 3-8 참조)과 「물관리기본법」 제27조3항를 제시하며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책편과 시설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②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의 개요'에서는 수립 기관(환경부)과 수립 근거(「수도법」 제4조) 등을 소개하고 시간적범위(목표연도 2031년(시설계획 2040년)), 공간적 범위(전국), 내용적 범위(국가수도 정책 및 추진과제,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계획, 상수도 안정화계획, 재정계획)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광역-지방상수도 통합·연계 강화 및 효율적 수자원 이용방안 마련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라는 수립목적과 대상 계획 구성(정책편과 시설편으로 구성된 2편의 종합보고서와 4대 유역별 보고서로 구성)을 포함한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계획의 수립 흐름도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정책편과 시설편으로 나누어 수립 절차를 작성하였다.

'③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에는 '종합평가'와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요소별 부합성 자체 평가의 주요 근거 및 내용'에서 11개 계획요소별 국가계획에 따른 심의 대상 계획의 해당되는 내용과 쪽수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근거 및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계획요소별 간략히 서술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합함/부합하지 않음/해당없음'을 부합 판단 근거와 함께 명시하였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 제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ㅇ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개요

- **(목적)**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
- **(범위)** 2022~2031년(시설계획은 2021~2040년), 전국 모든 시·군의 광역·지방·마을상수도 및 전용수도 등 수도시설 해당
- **(주요내용)** 생동감 넘치는 신뢰받는 수도를 비전으로, 4대 목표, 16개 추진전략, 44개 이행과제 체계로 구성

※ (수립방향) 유역 수요관리 기반의 용수확보 및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민 중심의 수도서비스 성과 혁신,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및 수도사업 관리체계 개혁

ㅇ 부합 여부 자체 평가 결과

- **(종합결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유역 내 물순환을 바탕으로 국가 수도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므로, 건전한 물 순환 및 유역별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함

※ (주요내용)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이 유역 중심의 효율적 물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물복지, 광역·지방연계, 안정화, 스마트물관리(SWM)사업 등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획 수립

- **(계획 요소별 부합 여부 결과)**

부합성 자체 평가의 계획 요소*	부합성 자체 평가 결과**
(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O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O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O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O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O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O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O

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① 계획 명칭	ㅇ 국가수도기본계획
② 수립 기관	ㅇ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박진형 사무관, 044-201-7129, jinhpark@korea.kr)
③ 계획 기간 등	ㅇ **계획 기간** : 2022~2031년(시설계획은 2021~2040년) ㅇ **구분** : 신규(☑), 수정( ), 기타( )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ㅇ **계획의 목적** -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ㅇ **계획 수립 근거** - '수도법' 제4조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2031년(시설계획-204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내용적 범위 : 국가수도 정책 및 추진과제,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재정계획
⑤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계획의 주요 내용** - **(수립목적)**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광역-지방상수도 통합·연계 강화** 및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주요내용)** 수도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별 추진과제 제시, 유역 중심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 마련, 수도시설의 확충·개량·안정화 계획 수립, 상수도 수질·수요관리 계획 마련, 재해대책 및 재정계획 수립 등 - **(계획구성)** 국가수도기본계획은 1편(정책편, 前 전국수도종합계획)과 2편(시설편, 前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되며, 2편은 종합보고서 및 4대 유역별 보고서로 구분 * 수도서비스 개선 및 지속가능한 상수도발전을 위해 기존의 수도분야 국가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수립 - 국가수도기본계획 목차(별첨1)
⑥ 계획의	ㅇ **계획의 수립 절차**

3.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①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종합평가	ㅇ **종합평가** (1) **(수립목표)**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 국내 용수 수요예측, 수도시설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수도사업의 경영·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 수립 (2) **(부합성)**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물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 물 분야 인력 및 물 산업 강화, 수도사업의 예산·재정계획 등 주요 내용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 장래수요 및 수급전망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한 사유는 산정방식(기준년도, 공급능력 등)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함 ㅇ **계획요소별 평가 내용**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물 복지 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확보가 가능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공급능력 등 산정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어 장래 수요 및 용수수급 전망 등 일부 내용은 상이하나, 수립원칙 및 목적이 일치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 및 선제적 상수원관리 정책·실행과제 추진 등을 통해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이 가능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4)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 장래 물 부족 대비 유역 중심의 신규 대체수자원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이 가능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자료 : 환경부(2022). 부합성 심의 요청서(국가수도기본계획)

〈그림 3-7〉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

다. 부합성 주요 결과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는 종합의견, 국가수도기본계획 목차, 붙임자료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자료는 검토기관별 결과 및 근거를 종합해 놓은 계획 요소별 전문 예비검토기관 검토 내용과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2부(KICT, 과학원 각 1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계획 수립에 KEI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종합의견을 포함한 예비검토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총괄기관으로서의 총괄 행정 업무 및 취합만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종합 결과가 작성되지 않고 지원단에서 KICT와 과학원 2곳의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예비검토 보고서를 완료하였다.

1) 최종 결과

KICT의 경우 계획 요소 10개 모두 부합으로 평가하였으며 과학원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평가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제외한 9개의 계획 요소를 부합으로 평가하였다. KICT와 과학원이 수행한 예비검토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0〉 부합성 평가 결과(국가수도기본계획)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KICT	과학원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부합	부합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부합	해당없음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부합	부합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부합	부합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부합	부합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부합	부합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부합	부합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부합	부합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기타	-	-

먼저 KICT는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이 국가계획에 부합함으로 부합함을,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은 장래 수요 및 용수수급 전망 등 산정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수립원칙 및 목적이 일치하므로 부합함을,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상수원관리 정책·실행과제 추진 등을 통해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부 방향과 추진과제의 보완 필요하나 부합함을,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은 유역 중심의 장래 물 부족 대비 대체수자원 확보 등 수돗물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으로 부합함을,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가뭄 모니터링, 비상연계 체계구축 등을 통해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는 수도 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계획이 수립되어있으므로 부합함을,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계획 수립으로 물기반시설 관리 효율성 향상되므로 부합함을,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물산업 증진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유역별 상수도시설의 연계·통합, 시민 참여 등을 통한 수도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은 물관리 기반시설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우선 투자 분야 예산 투자 방향 및 요금 현실화 등 재정구조 개편, 구체적 재원 확보계획(국가-지자체 분담)에 대한 방향이 일치하므로 부합합으로 평가하였다.

과학원의 경우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물 복지 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확보가 가능함으로 부합함을,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은 공급능력 등 산정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어 장래 수요 및 용수수급 전망 등 일부 내용은 상이하나 수립원칙 및 목적이 일치하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은 장래 물 부족 대비 유역 중심의 신규 대체수자원 확보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이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은 가뭄 대비 국가차원의 가뭄 모니터링 추진·전문인력 역량 강화·비상연계 체계구축 등을 통해 물 재해 안전 체계구축이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는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수도 분야 전문인력 양성·상수도 통합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 인력양성 및 물정보 선진화가 가능하므로 부합합을,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는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마련·기후위기 및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사용자 편의 강화·스마트 기술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계획 등을 통해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므로 부합함을,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국내 물 산업 증진을 위한 주요 기술·소재 국산화 추진 및 공동연구 등 기술 개발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물 기업의 정부 지원전략 수립 등을 통해 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는 상수도시설의 연계·통합 등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 및 수도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반영계획 등을 통해 물관리 협력 체계의 강화 및 국민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부합함을,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은 물관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국민 안전확보 분야 우선 투자 등 예산 투자 방향 및 요금 현실화 등 재정구조 개편·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국가-지자체 분담)에 대한 방향이 일치하므로 부합함으로 평가하였다.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은 유역관리 등 상수원관리 사항으로 해당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ICT는 물환경 자연성회복은 국가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과학원은 장래수요 및 수급전망 등 산정방식(기준년도, 공급능력 등)의 차이는 계획기간 통일, 조정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최종 제출되었다.

2) 요청 및 보완사항

최종 예비검토 보고서를 지원단에 제출한 후 '물수급 및 수질 전망'의 물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심의 요청서 등)에 따르면 국가계획과 용수수요량은 약 17억톤/년, 용수수급 부족량은 약 100배(국가계획 : 0.07억톤/년, 국가수도 : 7.6억톤/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부합함으로 판단한 세부 근거에 관해 정성적 및 정량적 검토 근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해 KICT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장래수요량을 추정함에 있어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용수수요량을 각 지자체별로 추정하여 광역시 및 도별로 구분 합산하고 적정한 용수수요량을 산정한다. 국가계획은 인구, 보급률, 유수율 등을 고려하여 물수급 전망을 예측한다. 이와 같이 장래 수요와 용수수급 전망 등이 인구추정과 LPCD(Liter per capita day, 하루일인당 물공급량) 등 산정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가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모두 부족량 발생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성 판단의 초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부족 수량과 지역간 물부족 발생정도는 세부적 계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립원칙(두 계획은 동일선상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 보급률, 유수율 등을 고려하여 물수급 전망을 예측함)과 목표(두 계획은 장래수요량을 추정함에 있어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용수수요량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함)는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과학원의 경우 의견 없음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답변 내용을 전달하였다.

제3절 시사점 및 개선점

1. 시사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개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1개에 대한 부합성 예비검토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합성 심의가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예비검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실제 검토 및 작성을 통해 검증하고 전문검토기

관간의 상호 의견수렴 및 수정작업을 통해 실제 검토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하수도 및 상수도와 같이 부문별 계획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고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예비검토와 관련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경험의 피트백을 토대로 각 요소별 주요 사항과 평가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향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2. 개선점

국가계획의 요소와 대상계획의 검토요소 간의 범위와 내용 차이로 인해 부합 및 미부합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여 미부합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마련이 각 계획별로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대상계획에 대한 접수 일정 등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및 관련 전문가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계획별 진행 상황을 사전에 체크하고 대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예비검토기관별 전문분야가 다르고 각 기관별 중점 검토 대상과 내용이 다름에 따라서 요소 평가에 대한 깊이와 검토내용의 수준 차이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관별 검토 안배와 적절한 검토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다. 부합 및 미부합에 대한 검토자의 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미부합에 대한 적정범위와 적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다수의 계획이 동시에 접수되어 추진될 때에는 취합과 종합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가 안되어서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우므로 최소한 간격을 두고 대상계획 검토 요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장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개선 및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제1절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및 운영 정립 방향
- 제2절 부합성 심의 운영 예산(안)
- 제3절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설명회
- 제4절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 제5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개선방안

제4장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체계개선 및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제1절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및 운영 정립 방향

1. 부합성 심의 절차의 효율성 개선

가. 부합성 심의 절차

1) 심의 절차 적정성 검토

부합성 심의 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로, 부합성 심의는 계획수립권자가 부합성 심의요청서를 지원단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계획수립권자는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자체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물관리계획(안)과 함께 양식에 따라 작성된 부합성 심의 요청서를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 공문으로 보내야 하며 대상 계획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또는 해당 계획수립을 심의하는 위원회 상정 예정일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심의·의결 완료까지 60일,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요청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수립권자는 계획(안) 및 요청서와 해당 파일을 수록한 저장매체(USB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권자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제출하고 지원단은 이를 확인 후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절 차	주 체	소요기간 (누적)
1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 요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1-1 부합성 심의요청서 보완 요청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계획수립권자	-

자료 : 물관리위원회지원단(2021).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계획(안)

〈그림 4-1〉 부합성 심의 절차

2단계로, 지원단은 제출된 부합성 심의요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요 내용, 심의 일정 등을 포함한 심의 추진계획을 심의요청서 접수 후 즉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때 서면(공문)보고가 원칙이나 필요시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획(안) 및 심의 요청서의 인쇄본은 위원별로 배포한다.

3단계로, 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계획에 관한 심의 추진계획이 보고되면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이 20일 동안 수행된다. 자체평가의 적정성, 부합성, 보완·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다양한 분야의 다수계획을 짧은 기간 내에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지원(예비검토 지원·전문기관)을 받아서 추진한다. 검토기관은 현지 조사, 추가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검토 요청

공문이 검토기관에 접수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검토 작성을 완료하여 지원단에 서면(공문)으로 제출한다. 지원단은 작성된 예비검토 보고서를 계획분과위원에게 송부하고 회의 날짜를 선정해 예비검토 보고서 등 관련 내용을 계획분과위원에게 보고하여 다음 단계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가 수행되도록 한다.

4단계로, 계획분과위원회는 지원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검토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심의 대상 계획(안)의 국가계획과 부합성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사전 검토 및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심의 안건 초안(또는 예비 검토 보고서)을 전체 위원에게 송부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된 심의 안건을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계획분과위원회는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요구 내용을 포함한다. 단, 계획수립권자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사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계획의 조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심의 안건 작성 및 사전 검토는 총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5단계는 심의·의결 단계이며 서면 심의·의결을 기본으로 하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면 회의로 진행된다. 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 일시를 정해 7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함께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의결 시 계획의 조정 필요 여부와 심의 결과(부합함/부합하지 아니함(조정 요구) 중 결정)를 결정하여 즉시 위원 및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부합함으로 의결되면 절차가 종료되지만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의결 시 계획 조정 요구가 이루어진다. 단, 계획수립권자가 조정 요구 내용(부합하지 아니함)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공문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며 물관리위원회는 재심의(서면)을 통해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결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획수립권자는 물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해야 한다.

6단계는 결과 조정 및 재심의까지 마친 결과는 마지막으로 조정 요구 조치 및 조치 계획 수립으로 이어진다. 계획수립권자는 계획 조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또는 조치 계획)을 물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내야 하며 계획의 수립·공표 전 계획의 최종본을 제출한다. 지원단은 제출받은 최종본을 통해 조치계획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부합성 심의 관련해서 현재까지 6번의 대상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8월까지 3건의 완료된 상태이다. 이를 토대로 절차의 적합성 평가 결과 현재 마련된 심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의 절차는 현재의 과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심의 절차의 개선 방향

모든 심의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행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로 현행 절차와 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심의 진행된 6개의 대상계획 중 8월까지 완료된 3개 계획 완료 시점을 확인해본 결과, 절차상의 최대기간인 90일을 넘어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제도를 처음 시작함에 따라 각 과정별 결정사항 및 수정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과 4단계 ~ 5단계의 과정에서 물관리위원회 심의 검토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즉, 예비검토 보고서 및 내용에 대해 보완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질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반복적인 시간 소요와 일정 조율 등에 장시간 소요가 있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연이 발생할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통해 반복적인 과정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심의 절차와 기간 준수에 대해 물관리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정해진 일정과 과정에 모두 참여하도록 반복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와 알림, 교육이 제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검토보고서의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명확성을 높여 쉽게 이해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의 지연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심의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절차의 효율성, 심의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1〉 부합성 심의 최종결과 비교

계획명 / 추진과정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안)	서해남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국가수도기본계획(안)
심의요청서 제출	2022.1.10.	2022.1.11.	2022.3.8.
심의요청서 보완 여부	없음	2021.11~12월 (사전조율, 메일)	2022.1~3월 (사전조율, 메일)
전문 예비검토 보고서 의뢰 (지원단 → KEI)	2022.1.24.~2022.2.9.	2022.1.24.~2022.2.9.	2022.3.8.~2022.3.22.
전문 예비검토 보고서 제출 (KEI →지원단)	2022.2.24.	2022.2.24.	2022.3.25.

추진과정 \ 계획명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안)	서해남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국가수도기본계획(안)
계획(안) 보완 여부	2022.3~4월	2022.3~4월	2022.4~5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2022.7.22.	2022.7.22.	2022.7.22.
결과 통보	2022.8.1.	2022.8.1.	2022.8.1.
조치 여부	결과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 *		
최종 결과	부합함	부합함	부합함

2. 예비검토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의 보완점 개선

가. 검토기관 추가 지정 및 기관별 예비검토 담당자 사전 지정 필요

예비검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검토기관의 역할과 대상 그리고 검토담당자에 대한 지정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예비검토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2.7.1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전문검토기관으로 포함되어 심의 대상 계획별 전문검토기관 추가 지정이 요구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3개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가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상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배제를 하거나 포함을 할지에 대한 지원단 및 예비·전문검토기관의 협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경우 국가기관으로 예비검토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 다수 계획의 진행에 따라 심의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기간의 여유가 없이 예비검토가 진행되는 경우 기관의 특성상 담당자 지정과 일정 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검토기관의 특성상 물분야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토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기관의 담당자 사전 지정과 대상 계획별 기관에 대한 사전 확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계획에 대한 예비검토 대상 기관 확정 및 각 기관별 예비검토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통해 각 부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별 참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의 협약 등을 체결하여 효율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소요 기간 고려한 일정 조율 필요

대상계획의 심의 요청에 대한 강제적 통제가 쉽지 않지만 가급적 대상계획의 예상 심의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의 요청이 지연되면 전문검토기관의 예비검토 진행 일정에 변동이 생겨 담당자 지정과 예비검토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실제 다수의 대상계획이 한꺼번에 요청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일정 변동으로 인한 전문검토기관의 협조와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시 세부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구체적이고 질 높은 보고서 작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심의요청서 접수 및 의결시 소요기간을 통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변동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전체적 대상계획의 추진 일정 조율과 계획별 진행사항에 대한 체크와 확인을 통해 사전에 전문검토기관에 공지해줄 필요가 있다.

3. 부합성 관리체계 개선 검토

부합성 심의는 크게 ①계획수립권자가 준비하는 부합성 심의요청서 작성 부분, ②검토지원단을 포함하여 지원단에서 작성하는 예비검토 보고서 마련 부분, ③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작성하는 부분으로 크기 구분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는 부분별 자료 작성이나 과정 그리고 검토의 기본틀은 제시가 되고 있으나 세부 내용별 구체성과 부분별 연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통합적 연계성과 구체성의 미비함은 전체 부합성 절차의 지연과 효율적, 효과적 결과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각 부문별 가이드라인이나 작성방법, 진행절차, 평가 방법 등 재검토하여 모두 부분을 포함한 “부합성 심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전체 심의 절차와 부분별 절차, 주요 작성내용, 주의 사항, 해결방안 그리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종합 업무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종합 업무지침을 통해 기관별 역할 및 전체 과정의 진행 내용 그리고 계획별 주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부합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계획 요소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합성의 심의 검토와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제2절 부합성 심의 운영 예산(안)

1. 개요

현재 부합성 예비검토 지원체계는 연구용역의 형태로 검토지원기관 중 하나의 기관이(현재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 예비 및 전문검토를 병행하고 운영상 필요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상계획에 따라 전문검토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전문 지정담당자를 참여시켜 진행하고 있다. 처음 연구용역 추진시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을 포함하여 10개 정도의 다양한 계획 심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 6개 기관 모두 예비검토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초 심의 예정이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 접수가 지연됨에 따라 제외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건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검토지원기관도 대상계획에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단,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정확한 역할과 대상계획 지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 대상계획의 예비검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부합성 예비검토에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부합성 검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대상 6개 기관별 검토비 지급 및 예비검토 지원체계에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관별 논의를 통해 향후 적용 가능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채택 및 보완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2. 예산(안)

가. 근거 검토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관에 부합성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7]

---

7)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시행령, 검색일:

이에 포함되는 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정한다.[8)]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부합 여부 심의 대상 계획, 법정계획의 부합 여부 심의·의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예비검토 및 의견수렴, 지원 등의 목적에 따라 부합성 예비검토가 현재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구조를 고려한 총괄 예산(안)을 설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용역에서는 새롭게 추가되어 어떤 계획에 참여할지에 대한 결정이 안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나. 역할 검토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검토지원기관을 예비검토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예비검토 지원기관(총괄기관)

예비검토 지원기관은 검토기관 중에서 예비검토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문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총괄역할과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총괄역할은 전문검토보고서 취합 및 정리, 총괄의견 작성, 지원단-전문기관 간 보완사항 관련 질의 전달 및 논의 진행, 검토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며 행정지원은 전문기관과의 연락, 자료 및 정보 제공, 회의진행, 지원단과의 공식적인 접수와 송부 등 보고서 작성 및 송부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포함한다. 현재 연구용역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해당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2) 예비검토 전문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은 기관별 전문성을 토대로 해당 계획의 전문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의에 참석한다. 효율적인 검토이행을 위해서 전문기관마다 총괄담당자

2022.8.11.

8)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시행령, 검색일: 2022.8.11.

를 지정하도록 하고 대상계획 검토 진행 이전의 사전회의 참석 및 기관별 담당자 지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총괄 담당자는 각 심의 대상 계획 검토 수행 전 기관별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해진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사전 메일을 통해 예비검토 지원기관에 전달한다. 총괄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면 모든 계획에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해주면 담당자별 직접 연락에 따라 별도의 총괄 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될 수는 있다.

다. 예산(안) 설계

사업시행 구조의 설계를 위해 고려한 안은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이 참여하는 방안과, 기관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2가지 방법이다. 2가지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표 4-2〉와 같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총괄기관의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기관별 의견을 포괄하여 종합 의견 수렴에 용이하고, 부합성 예비검토 심의를 위한 자료의 취합, 관리가 용이한 구조이며, 개별기관에 필요한 필수 인력, 사업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개별 기관보다 예산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단, 개별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총괄기관의 관리 인력이 다수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4-2〉 사업시행 구조(안)

구분	장점	단점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 기관별 의견을 포괄한 종합 의견수렴체계 효율적 • 부합성 예비검토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관리 용이 • 개별 기관 추진 사업 대비 인력 관리 및 사업 추진 예산 소요 적음	• 사업총괄기관 관리인력 소요 • 개별 기관의 구체적 의견 확인의 한계
기관별 시행	• 개별 기관의 전문적 의견 전달 용이	• 기관별 의견을 포괄한 종합 의견수렴 체계미비로 인한 비효율성 • 부합성 예비검토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관리의 한계 • 개별 기관 사업 관리인력 소요 • 사업 관리 인력 관리 및 사업내용 추진을 위한 예산 과다 소요

자료 : 저자 작성.

개별 기관별로 부합성 예비검토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별 기관의 전문적 의견을 전달하기에

용이하고 보다 대표성을 가지는 구조이나, 기관별 의견을 포함한 종합 의견수렴 체계의 한계가 있으며, 부합성 예비검토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관리의 한계가 있고,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운영되면 개별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관리 인력, 예산 등의 소요로 인해 사업총괄 기관의 주관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소요가 커질 수 있다.

라. 적정 검토비 산정 방법

부합성 검토 전체 비용에는 예비검토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비용인 '①전문기관 검토비용(이하 "검토 비용")'과 검토진행을 위해 수행된 필요 회의 비용인 '②회의비용',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본 비용인 '③기타 행정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 부합성 검토 비용	=	**① 검토비용**	+	**② 회의비용**	+	**③ 기타행정비용**
	×	④ 검토기관 수	×	⑤ 계획 수	×	⑥ 검토 인원 수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2〉 총 부합성 검토 비용 산정 개념

또한 매 부합성 검토시에는 참여검토기관과 검토인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획 1건 당 검토기관 1곳, 검토 전문가 1인의 검토 비용산정을 "기본 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실제 비용은 계획 건수, 회의 개최 및 참석 여부, 검토 인원 1인 초과 등의 이유로 산정된 비용과 상이하겠지만 대략적 예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변수들에 대해 고정값을 두고 산정하였다.

부합성 검토 비용 산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적정 검토비와 검토 비용 지급 방안에 관한 사항이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두는가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검토 비용이란 전문 검토기관의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①검토 시간, ②검토 항목, ③작성 보고서 페이지수 등 총 3가지 방안이 고려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다.

1) 검토 시간을 고려한 비용

연구용역의 총괄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전문가활용지침”에 따르면 과제 자문의 경우, 2호(정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중앙부처 국장급) 기준은 34,750원/시간, 3호 기준(정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연구위원급·중앙부처 사무관급)은 26,650원/시간, 기타는 17,810원/시간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지원기관의 예비검토 절차는 총 14일이지만 전달, 취합, 수정, 회의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문검토기관에서는 10일 간 검토를 수행하도록 설정하였고 실제 6건의 부합성 심의 담당자들의 실제 참여 시간을 고려해본 결과 1일당 약 4시간을 적정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문검토기관의 검토 담당자의 보편적 직급을 고려했을 때 3호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3호기준으로 하루 4시간, 10일 동안 예비검토를 수행하였을 때 산정된 기본 단가는 약 1,066,000원이다. 산정 결과를 토대로 관리의 효율성과 지급의 명확함을 고려해서 만원 단위를 제외하고 검토 비용의 기본 단가는 1건당 1,000,000원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전문가의 숙련도, 경력 및 해당분야의 적합성에 따라 검토 시간에 대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검토기관별 대외활동 시간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2) 검토 항목을 고려한 비용

검토 항목은 국가계획의 10개의 계획별 해당 요소 중 국가계획 상의 전략 세부 항목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총 36개 항목에 대한 해당 여부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검토 항목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항목별 작성 제출된 O, X 표에 따라 비용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O 표시를 카운트하여 항목 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의 항목 추가 검토시 지급하는 50,000원을 표준 단가로 설정하였을 경우 36개 모두 해당시 기본 단가는 1,800,000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검토 항목을 고려하게 될 경우 검토 항목별 비중 및 단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대상 계획별로 매번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모든 항목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O, X 표시 기준에 따라 X로 표시한 항목들에 검토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3) 작성 보고서 페이지수를 고려한 비용

검토위원이 작성한 원고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국환경연구원의 전문가활용지

침 기준 단가에 맞춰서 A4 기준 장 당 40,000원으로 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예시로 하여 비용 산정을 해보았을 때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총 33페이지로 132만원이 산정된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총 13페이지로 52만원이 산정되어 기관별 비용 차이가 매우 커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장수가 보고서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진행 예정인 계획들에 대해 기관별 장 수 파악이 어려워 금액 산정 시 예측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4) 검토 비용의 최종 단가 결정

검토 시간, 검토 항목, 작성보고서 페이지수를 고려한 총 세가지 안의 장·단점은 〈표 4-3〉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고려 가능한 지급기준을 검토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가지며 기관별, 전문가별 형평성과 평등성을 가진 방법은 검토시간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판단이 되었다.

보단 상세한 기본값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된 6개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10일 4시간을 기본 단가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같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동일 수준의 계획별 요소가 있는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부문별 요소를 가진 계획들 예로 들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의 경우에는 적정 검토시간에 대한 참여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검토 시간의 조정에 따른 검토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 4-3〉 검토 비용 지급 방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검토 시간	• 계획별 검토자들에게 일관된 비용 지급 및 평형성 제고 • KEI 전문가활용지침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공 용이	• 검토기관별 대외활동 시간 제약 고려 • 1일당 보고서 검토 시간에 대한 적합성 논의 필요
검토 항목	• 36개 검토 항목을 이용한 단순 계산법 • 검토항목 개수를 이용한 계획별 금액 비중 조절 가능	• 검토 항목별 비중 및 단가 산정에 대한 논의 필요 • 검토 항목(O/X) 표시 기준에 따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X로 표시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 비용이 산정되지 않음
작성 보고서 페이지 수	• KEI 전문가활용지침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공 용이	• 기관별 비용 차이가 매우 커짐 • 진행 예정 계획들에 대해 기관별 장 수 파악이 어려워 비용산정 시 예측불가능성 존재

자료 : 저자 작성

마.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를 고려한 예산(안)

수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총괄기관 주관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관 또는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적 의견을 전달하기 용이하도록 개별 기관의 구체적 의견 확인을 위한 사업총괄기관의 관리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인건비의 책정이 추가 고려되었다.[9] 또한 사업총괄기관 주관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진행시, 관련 세부 항목 회의가 필요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비용인 기타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모두 반영한 연간 필요한 최종 예산(안)은 〈표 4-4〉와 같다.

〈표 4-4〉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고려한 예산(안)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500,000,000	100.0	
1. 인건비	285,566,221	57.1	
가. 책임연구원	15,969,724	3.2	개별 기관 의견 확인을 위한 관리인력 충원
나. 연구원	195,925,939	39.2	
다. 연구보조원	73,670,558	14.7	
2. 경 비	143,439,287	28.7	
가. 여비	5,336,000	1.1	회의비 내에 예비검토비용, 사전, 사후 예비검토 회의 자문, 부대경비 등 포함
나. 유인물비	13,457,287	2.7	
다. 전산처리비	4,186,000	0.8	
라. 재료비	17,000,000	3.4	
마. 회의비	94,000,000	18.8	
바. 임차료	7,200,000	1.4	
사. 교통통신비	2,260,000	0.5	
3. 일반관리비	25,539,947	5.1	
4. 타기관 예산	-	0.0	
5. 부가가치세	45,454,545	9.1	

자료 : 저자 작성.

바. 기관별 개별 시행 예산(안)

기관별 부합성 예비검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총 사업비의 안배를 위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의 자료를 토대로 부합성 예비검토와 관련한 각 연도별 계획과 참여기관 예상 참여 건을 산출한 결과, 아래 〈표 4-5〉와 같이 기관별 검토 건을 도출했다.

9) 상세 예산(안)은 부록 참고.

〈표 4-5〉 연도별 부합성 예비검토 계획수에 따른 기관별 예상 참여건

시행 연도	계획수	기관수	총계	한국환경 연구원 (총괄)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국립 재난안전 연구원	국립환경 과학원
2021	9	9	39	9	4	4	9	4	9
2022	16	18	55	15	1	7	16	1	15
2023	9	9	27	9	1	1	8	1	7
2024	5	7	19	5	0	4	5	0	5
2025	14	21	57	14	6	5	13	5	14
2026	12	12	48	11	4	5	12	5	11
2027	7	3	21	7	0	0	7	0	7
2028	13	11	53	13	5	5	12	6	12
2029	5	7	19	5	0	4	5	0	5
2030	16	28	64	16	7	7	14	5	15
합계	106	125	402	104	28	42	101	27	100

자료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내부자료(2021.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각 사업 참여 비중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① 시나리오A(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② 시나리오 B(부합성 검토의견에 대한 총괄 취합, 의견 전달을 위한 역할을 총괄기관이 일부 일임 가정, 참여비율을 총괄기관만 110% 조정하여 재산정), ③ 시나리오 C(일부 기관 참여비중 경비 지급으로 가정[10], 재난연, 과학원 참여비율 30% 조정하여 재산정)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표 4-6〉 기관별 시행시 예상 참여비율

구분		한국환경 연구원 (총괄)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국립환경 과학원
참여건수 (건)		104	28	42	101	27	100
참여비율 (%)	시나리오 A (개별 예비검토)	25.9	7.0	10.4	25.1	6.7	24.9
	시나리오 B (총괄 110% 조정)	27.7	6.8	10.2	24.5	6.5	24.2
	시나리오 C (재난연, 과학원 30% 조정)	35.4	8.7	13.0	31.2	2.5	9.3

자료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내부자료(2021.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기관 고유 업무 특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기관의 사업 형태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 없이 소요 경비만 지급한다고 가정해 두 기관의 참여비율을 30%로 조정하였다.

기관별 시행을 실시할 경우, 각 기관의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 소요 및 관련 기본 경비 등을 감안하여 부합성 예비검토에 소요되는 총괄 예산을 1,000백만원이라고 가정 하에[11], 아래 각 기관별 예산(안)을 제시하였다.

〈표 4-7〉 기관별 시행시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환경 연구원 (총괄)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국립환경 과학원
시나리오 A (개별 예비검토)	259	70	104	251	67	249
시나리오 B (총괄 110% 조정)	277	68	102	245	65	242
시나리오 C (재난연, 과학원 30% 조정)	354	87	130	312	25	93

자료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내부자료(2021.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관별 시행 하에 총괄기관의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시나리오A로 운영될 경우 총괄기관 업무 없이 수행되나, 시나리오 B, C의 경우 총괄기관의 취합업무 등을 감안하여 관련 인건비, 경비 부문을 증액하여 운영한다.

〈표 4-8〉 기관별 시행 하에 총괄기관 예산(안)

구 분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시나리오C	
	금액 (천원)	구성비(%)	금액 (천원)	구성비(%)	금액 (천원)	구성비(%)
총 계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000	100.0
1. 인건비	122,118	12.2	138,490	13.8	199,749	20.0
가. 책임연구원	15,970	1.6	15,970	1.6	15,970	1.6
나. 연구원	97,963	9.8	97,963	9.8	146,944	14.7
다. 연구보조원	8,186	0.8	24,557	2.5	36,835	3.7
2. 경 비	37,279	3.7	37,279	3.7	48,986	4.9
가. 여비	7,306	0.7	7,306	0.7	11,263	1.1
나. 유인물비	5,297	0.5	5,297	0.5	5,297	0.5
다. 전산처리비	3,076	0.3	3,076	0.3	4,186	0.4
라. 재료비	8,000	0.8	8,000	0.8	10,000	1.0
마. 회의비	10,200	1.0	10,200	1.0	14,400	1.4
바. 임차료	1,500	0.2	1,500	0.2	2,000	0.2
사. 교통통신비	1,900	0.2	1,900	0.2	1,840	0.2
3. 일반관리비	8,693	0.9	10,322	1.0	14,355	1.4
4. 타 기관 예산	741,000	74.1	723,000	72.3	646,000	64.6
5. 부가가치세	90,909	9.1	90,909	9.1	90,909	9.1
비고	- 개별 책임하에 수행		- 주관기관 예산 277,000 - 총괄, 취합 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예산 354,000 - 총괄, 취합 인건비 및 경비 증액	

자료 : 저자 작성

11) 검토기관이 최대 9개 기관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고 기관별 최소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가정하였다.

사. 총괄 예산(안)

앞서 설정한 사업시행 구조를 고려하여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기관별 시행에 따른 예산(안)을 설계하였다. 단, 기관별 시행에 따른 예산(안)은 기관별 참여비중을 고려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와 기관별 시행한 경우 시나리오 A, B, C의 세부 예산(안)은 [부록3]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4-9〉 총괄 예산(안)

구 분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기관별 시행					
			시나리오A		시나리오B		시나리오C	
	금액 (천원)	구성비 (%)	금액 (천원)	구성비 (%)	금액 (천원)	구성비 (%)	금액 (천원)	구성비 (%)
총 계	500,000	100.0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000	100.0
1. 인건비	285,566	57.1	122,118	12.2	138,490	13.8	199,749	20.0
가. 책임연구원	15,970	3.2	15,970	1.6	15,970	1.6	15,970	1.6
나. 연구원	195,926	39.2	97,963	9.8	97,963	9.8	146,944	14.7
다. 연구보조원	73,671	14.7	8,186	0.8	24,557	2.5	36,835	3.7
2. 경 비	143,439	28.7	37,279	3.7	37,279	3.7	48,986	4.9
가. 여비	5,336	1.1	7,306	0.7	7,306	0.7	11,263	1.1
나. 유인물비	13,457	2.7	5,297	0.5	5,297	0.5	5,297	0.5
다. 전산처리비	4,186	0.8	3,076	0.3	3,076	0.3	4,186	0.4
라. 재료비	17,000	3.4	8,000	0.8	8,000	0.8	10,000	1.0
마. 회의비	94,000	18.8	10,200	1.0	10,200	1.0	14,400	1.4
바. 임차료	7,200	1.4	1,500	0.2	1,500	0.2	2,000	0.2
사. 교통통신비	2,260	0.5	1,900	0.2	1,900	0.2	1,840	0.2
3. 일반관리비	25,540	5.1	8,693	0.9	10,322	1.0	14,355	1.4
4. 타 기관 예산	-	0.0	741,000	74.1	723,000	72.3	646,000	64.6
5. 부가가치세	45,455	9.1	90,909	9.1	90,909	9.1	90,909	9.1
비고	- 주관기관 예산 500,000 - 개별 기관 의견 수렴 관리 인력 및 예비검토 회의비 비목 산정		- 개별 책임하에 수행		- 주관기관 예산 277,000 - 총괄, 취합 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예산 354,000 - 총괄, 취합 인건비 및 경비 전반적 증액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설명회

부합성 심의 제도 운영 및 체계 이해도 제고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수립권자와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나누어 2회 진행하였으며, 계획수립권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낙동강 유역지원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합성 심의 제도(안)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 계획수립권자 대상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2년 8월 1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석하지 못한 낙동강 유역지원팀을 대상으로 8월 17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나. 참석자

예정되었던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중 접수 지연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였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4건(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계획수립권자인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8월 10일 진행한 계획수립권자 대상 설명회의 참석자는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16인, 한국환경공단 3인, 연구진(KEI) 4인을 비롯한 총 23인이 참석하였으며 8월 17일 진행한 추가 설명회의 참석자는 지원단 3인, 연구진(KEI) 2인을 비롯하여 총 5인이 참석하였다.

다. 발표 및 논의 자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법정계획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부합성 심의 전체 절차와 세부 예비검토 방법과 기준을 공유하고 2022년 상반기 부합성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 물관리 법정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계획수립권자가 작성해야 하는 심의 요청서 작성요령(지원단에서 마련한 세부 지침)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향후 작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와 심의서 작성 및 심의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라. 질의 및 의견

부합성 심의절차 및 예비검토 절차와 심의요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진행 상황을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사항 및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계획수립권자로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의견은 계획요소 중 물수급 및 수질전망 파트에서 수질전망의 정량적 지표 작성에 대한 어려움과 각 유역의 물관련 계획수립 진행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유역계획의 조속한 진행 필요에 대한 사항이었다.

유역지원팀별 의견을 살펴보면 한강 유역지원팀의 경우 심의요청서를 보완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기간이 촉박하며 수치를 다룰 때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히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낙동강 유역지원팀의 경우 심의요청서 작성시 자체평가의 부합여부 평가가 적합한지 자체판단 하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역계획과 하위계획의 부합여부 평가 안내 및 판별기준 가이드라인과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 절차도 사전 제공을 요청하였다. 추가적으로 예비검토 지원·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예비검토 보고서를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유역지원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지원단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강 유역지원팀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유역별 수질전망치 자료 공유를 요청하였다. 영산·섬진강 유역지원팀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와 평가위원 간 소통 확대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2. 검토기관 대상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2년 8월 11일 서울역 도원결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나. 참석자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를 진행하는 전문검토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지원단 6인, 연구진(KEI) 4인, 검토위원 12인, 한국환경공단 1인을 비롯한 총 23인이 참석하였다.

다. 발표 및 논의 자료

계획수립권자 대상 설명회와 동일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법정계획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부합성 심의 전체 절차와 세부 예비검토 방법과 기준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부합성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 물관리 법정계획을 간단하게 공유하였다. 특히, 검토기관에서 추진한 6개의 실제사례와 부합성 예비검토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라. 질의 및 의견

전문검토기관으로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의견은 검토의 일관성·객관성 유지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 및 고려사항 제시, 부합성 평가 의견의 대상 결정(전문가 개별 vs 기관 의견), 미부합/해당없음에 대한 전문가별 논의 및 합의 과정, 검토 담당 전문가 인력 부족에 대한 향후 방향 설정 필요에 대한 사항이었다.

전문검토기관별 의견을 살펴보면 과학원의 경우 부합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 및 범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예비검토 시 일부 부합에 대한 방향성 및 평가 방법과 정성적 요소보다 세부적으로 객관적 항목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판단 기준, 국가계획과 심의 대상 계획 간 해당 없는 부분에 대한 전체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사례를 축척한 후 국가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검토에 필요한 항목의 정리가 필요하며 모델링의 경우 제3자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해당없음의 경우 검토기관의 의견(전문의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각 기관별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별 예비검토 진행 일정에 대한 사전 공유를 요청하였다. 재난안전연구원의 경우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지침·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부합성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별 기준이 상이하며 기관의 담당자 변동에 따른 예비검토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해당없음이 다수 포함된 계획의 경우 추후 반영하여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설명회 개최 시사점

부합성 심의 절차 이행 초기인 관계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전하게 결정하고 이행하여 최적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동의하였고 다수의 실제 심의 절차 진행과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심의서 작성요령, 부합성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양식과 절차 전달과 개선이 지속해서 진행되었지만, 실제 이행하는 기관 및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고 심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다수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해의 폭과 전문성 및 경험의 차이점이 다수 있고 개념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한꺼번에 만나서 서로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이해 수준을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심의 절차 및 방법의 일관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었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4절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1. 가이드라인 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부합성 예비검토 수행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절차, 작성 원칙, 검토 범위를 포함하고 세부 작성 기준과 작성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검토지원기관(예비·전문검토기관)의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대한 명확성·일관성을 제공하고 부합성 예비검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면서 부합성 예비검토를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보고서를 예시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부합 여부 판단 기준과 작성 절차 등 다수의 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검토기관·지원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작업을 거쳐 작성되었다. 현재, 제한된 대상계획의 진행에 따라 실제 사례 반영률이 낮으나 향후 보다 다양한 대상계획을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최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 목차 및 주요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진행된 예비검토 사례의 절차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요, 검토 및 작성 요령, 붙임 자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요에서 가이드라인 작성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전체적인 부합성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였다. 예비검토기관과 전문검토기관으로 구분하여 담당업무와 각 해당기관을 안내하고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과 각 계획별 담당 검토기관을 함께 나타내었다.

검토 및 작성 요령에서는 국가계획의 계획요소를 기준으로 소극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부합/미부합/해당없음'의 부합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4-10〉 예비검토 원칙 및 판단기준

1. 부합성 검토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계획요소를 기준으로 소극적 검토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계획요소, 세부방향, 적용방안, 추진과제 등의 포함 및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부합" 및 "미부합" 판단
  · 물관리기본계획 요소와 내용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

2. 부합성 검토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타 계획간의 부합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함
- 검토대상 계획 외에 국가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하위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부합한 것으로 검토

3. 부합성 검토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검토대상계획"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다른 관련 자료는 참고로 활용함
- 계획수립기관이 제출한 부합성 심의요청서는 참고로 활용함
- 예비·전문 검토기관은 부합성 심의요청서 기준으로 예비검토 수행하지 않으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문 기준으로 검토대상계획의 부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함

4. 부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부 합) 검토대상 계획에 국가계획의 계획요소와 관련된 세부방향, 적용 방안 또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미부합) 검토대상 계획에 국가계획의 계획요소와 관련된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 방향, 적용방안 또는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지 않아 미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의견에 미부합 사유를 요약 제시

이어 지원단의 대상 계획 사전검토 요청부터 시작하여 예비·전문검토기관이 수행한 예비검토 보고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예비검토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및 작성 세부 내용에 대해 작성하였다.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를 함께 진행하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예비검토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를 예시로 사용하였다. 해당 예시에는 부합성 평가 계획요소 분류표, 심의요청서에 대한 간략한 예시와 예비검토 종합의견 작성 및 부합성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예비검토를 수행하면서 기관별 담당자 사전 지정, 예비검토 기간 엄수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덧붙였다.

붙임자료에는 부합성 평가 계획요소 분류표 및 심의요청서와 부합서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을 전문검토기관과 예비검토기관으로 나누어 첨부하였다. 작성된 본 가이드라인은 부록4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3〉 예비검토 작성 가이드라인 절차

3. 시사점 및 개선점

부합성 예비검토 수행 및 작성에 있어 편의성,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작성된 본 가이드라인은 작성 당시 완료된 예비검토 보고서 3건(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참고할만한 예비검토 보고서가 많지 않아 모든 심의 대상 계획마다 특성을 고려할 수 없었기에 공통된 일반적 절차 및 원칙대로 작성하였다. 이후 진행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3건(팔당댐 상류, 용담댐, 섬진강상류)의 예비검토 작성을 통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계속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진행될 각각의 계획의 특성에 맞춰 작성될 수 없기에 대상 계획별 절차 및 작성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다수의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사례 축척을 바탕으로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등 수정 및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부합 여부 판단에 대한 다수의 예시가 필요하다. 예비·전문검토기관이 예비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합/미부합/해당없음'의 부합 여부 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 작성이다. 소극적 검토의 특성상 검토기관의 부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세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 판단 원칙을 제시한 후 부합, 미부합, 해당없음의 작성 예시를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공한다면 판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검토 부합 판단 기준에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단 근거 작성에 있어 세부적으로 작성된 예시를 통해 보다 명확한 판단 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한다.

제5절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개선방안

본 연구용역은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진행과 관련 자료의 작성 및 평가방법 마련에 집중하여 실제 예비검토 과정의 진행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지원검토기관의 운영 방법 및 예산(안) 마련 등 예비검토 부문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효율적 진행과 처리 및 작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심의 전체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부합성에 대한 개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방향성 설정 그리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심의 전체 절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 개최 및 지원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 심의 절차와 필요 양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합성 검토에 대한 정의 명확화

부합성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논리적 무모순성을 의미하며 법 효력과 관련하여 상·하위

법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이 일관된 통일성 유지여부와 그 계획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지속가능한 이행과 상응하는 방식인지를 판단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다른 법률간의 부합성 이행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는 상세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미 기존 연구에서 심의 전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계획에 대한 심의와 예비검토가 바로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위계획을 검토하는 체계로 예비검토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수립된 계획에 부합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별 개선과 함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부합성에 대한 정의와 목적 그리고 방식에 대한 명확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와 초기 심의는 기본계획의 계획요소의 포함여부 그리고 마련된 전략들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치와 추진에 근접하는지 등 맥락을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하고 심의 과정의 진행을 통해 정의와 목표의 고도화 및 선진화에 대해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2. 부합성 심의 전과정에 대한 통합지침 마련

부합성 심의 과정은 심의요청서 마련, 예비검토 보고서 마련,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략적인 절차와 작성 요령 및 검토 가이드라인 그리고 심의 과정에 대한 진행 경험이 있으나 심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지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각 과정별, 부분별 연계성 및 일치성, 일관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까지 다양한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나 심의 경험과 진행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합성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현재 각 부분별로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체계를 단계별로 통합, 개선하면서 공통요소와 개별요소를 고려한 종합 지침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유사한 범위와 틀안에서 부합성 심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부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기준, 방법의 표준화 필요

현재 부합성 심의와 평가는 부합, 미부합, 해당없음 이라는 3가지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다른 사례와 같이 동일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수치 및 등급,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정량적인 방법 등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성적인 판단은 전문성 등을 인정하여 다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매우 좋은 경우이나 동일한 내용과 계획요소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일관성과 재량의 폭이 커서 주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부합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소별 주요 검토 범위와 내용의 범위를 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넘어서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내용을 제시하여 향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기관별 의견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으며 심의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고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획의 취지와 목적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의 부합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 및 판단과정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표 4-11〉 유사계획 간의 예비검토 결과 차이 발생 사례

구분	계획요소	낙동강 중류	서해남부	팔당댐 상류	용담댐	섬진강 상류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방향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2	물수급및 수질 전망	미부합	미부합	부합	부합	미부합
3	물환경의자연성 회복	부합	미부합	미부합	부합	부합
4	지속가능한물 이용 체계 확립	미부합	미부합	미부합	부합	부합
5	물재해안전 체계 구축	미부합	미부합	부합	부합	부합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합	해당없음	부합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부합	부합	부합	미부합	부합
8	물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합	해당없음	부합
9	물관리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미부합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4. 기본계획 요소별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한 범위 결정 필요

현재 국가계획의 부합성 검토 주요 계획으로는 ①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②물수급 및 수질 전망, ③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④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⑤물 재해안전 체계 구축, ⑥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⑦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⑧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⑨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 활성화, ⑩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등 10개 요소로 구분되어 부합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계획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계획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며 실제 심의 결과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해당없음을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계획의 주요 계획요소별 주요 검토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계획수립자나 평가자, 심의 당사자들이 해당 내용이 대상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확정은 환경부를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4〉 국가계획 부합성 검토의 계획요소별 주요 검토 내용(안)

5. 부합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현재 국가계획 부합성 예비검토의 검토기관별 검토는 검토기관에서 지정된 담당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검토원칙(One Fails All fail)에 따라 그 결과를 지원단에 제출하여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각 부문별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수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부문별 관심도, 전문성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로 인해 검토 결과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의견반영 시 적정한 수준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급적 전문가의 직접 의견보다는 해당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으로 제시할 경우를 고려해볼수가 있는데 이는 보다 심도 있고 객관성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 의견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검토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등의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검토자의 의견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때 관련 공문발송과 내부 협의 등의 추가적인 절차에 의한 검토 시간의 지연 등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지정된 전문가가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부합이나 미부합 등의 판단 시에는 그에 따른 의견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와의 연계 확대

국가계획의 부합성 검토와 동일하게 현재 물관리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부합성 심의제도가 준비 및 시행되고 있다. 본 심의는 유역의 물관리 전략이 지자체 실행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계획 간의 중복·비효율을 개선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관성 있는 유역물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계획보다 더 많은 14종의 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본 심의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부합성 예비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한 심의체계와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검토 수준과 내용 그리고 대상계획이 서로 다르지만, 심의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적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심의 관련 조직과의 연계성과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방법과 부합성 검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 검토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원단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소통과 정보의 교류, 주기적인 통합 회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대상 계획별 주요 체크사항 마련

6개의 부합성 예비검토를 통해 동일한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동일한 지침에 따라 계획내용이 작성됨에 따라 주요 전략과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계획은 최소한 동일 또는 공통의 전략들이 마련될 수밖에 없고 부합성 검토의 결과도 동일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별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일한 계획을 검토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유사성 그리고 차별성 등을 쉽게 파악하여 부합성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가계획의 계획요소별 주요 검토 내용을 체크하는 리스트를 부합성 예비검토기관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계획 요소		검토 필요
제2장 물관리 여건 및 전망	2030 물수급 전망	O
	2030 수질 전망	O
제3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비전	O
	목표	O
	3대 혁신 정책	O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추진 과제 1. 물환경의 지연성 회복	[전략 1]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O
	[전략 2] 안전하고 쾌적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O
	[전략 3]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X
	[전략 4] 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문화 활성화	X
	[전략 5] 물환경 관리 기존 및 관리체계 개선	X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확립	[전략 1] 미래 물부족 대비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기반 조성	X
	[전략 2]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O
	[전략 3] 서로 배려하는 협력적 물 배분 기반 마련	X
	[전략 4] 국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X
	[전략 5] 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X
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전략 1] 가뭄관리 체계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 체계 구축	X
	[전략 2] 기반시설(댐·하천·저수지 등)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X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계획 요소		검토필요
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전략 3]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체계 구축	O
	[전략 4] 홍수 예보체계 고도화	X
	[전략 5] 도시 침수 관리체계 강화	O
4. 물과학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전략 1]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O
	[전략 2]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화 관리체계 지능화	O
	[전략 3]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확보	O
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전략 1] 재해대응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마련	O
	[전략 2]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O
	[전략 3]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O
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전략 1] 물 관련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X
	[전략 2]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	O
	[전략 3] 국내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X
	[전략 4]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	X
제5장 계획의 이행 방안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O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	O
	물 관련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O
	다양한 주체 간의 물 관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노력	O
제5장 계획의 이행 방안 4.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투자 방향	O
	재정구조 재편 및 재원 확보 방향	O

〈그림 4-5〉 예비검토시 검토 필요 항목 체크리스트 예시

예비검토시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필요 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각 전문기관별 작성

된 예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국가계획의 계획요소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부합 여부를 결정하고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최소한 계획별 필수 검토 항목이 도출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검토와 판단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 계획별 필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없음"이나 "미부합"에 대한 검토시 적합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 목표 및 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 유역단위의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제시
물 수급 및 수질 전망	✓ 장래 생·공용수 등 유역하수도 중권역 지역의 생활계 물수급 전망 제시 및 오염원 내용 수록 여부 ✓ 물수급 및 수질 전망에 사용된 수치, 가정 및 모의 방법의 타당성 여부 ※ 단,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은 점 및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해 달성 가능한 것으로, 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기준 달성방안 제시는 불가능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생활계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및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 계획 반영 여부 ✓ 하수처리 성능 향상 및 수질기준 강화에 관한 타당성 여부 ✓ 생활계 점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 기여도 및 삭감 가능량을 고려한 저감대책 수립 여부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물재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하·폐수 재이용 현황 제시 ✓ 유역하수도 중권역 지역의 물 재이용 목표량 설정 ✓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장래 계획수립 방향 제시 ※ 단, 시/군별 세부 재이용 방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하기 어려움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 우수관로 포함한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화 지역의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방안 제시 여부 ex) 펌프장 증설, 저류시설 설치 및 확장, 하수관망 개선 등 * 유역하수도 중권역 지역 내 집중강우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지역(도심지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산지·농촌 등 도시외곽지역 침수사고는 하수도정비에 따른 직접적인 방재 영향력이 없음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검토 해당없음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계획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쇄계획 제시 여부
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검토 해당 없음
물관리협력 체계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계획 제시 여부 ✓ 전략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와 절차, 추진계획 등 제시여부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중장기 예산 투자방향	✓ 중장기 하수도사업 소요비용 산정 내용 제시여부 ✓ 유역하수도 중점 하수처리시설 선정 내용 제시여부 ✓ '40년까지 하수분야 재원 확보방향을 국비, 지방비로 구분 제시여부 ✓ 중권역 지역의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정부의 상위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여부 (탄소중립정책 등) ✓ 중권역 지역의 중장기 목표(유역 수질개선 등)에 부합하도록 추가 재원조달방안 등 적극적 계획수립이 실천되어 있는지 여부
기타 의견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경우 국가계획의 부합성 보다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성 검토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그림 4-6〉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검토시 계획요소별 주요 판단 사항 예시

8.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교육 확대 및 홍보자료 마련

부합성 심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절차의 체계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서로 다른 이해와 판단, 검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장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개념과 절차 그리고 검토내용 및 심의 사항 예시를 활용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권자, 검토지원 전문가, 심의 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심의 절차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해와 갈등, 지연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준 향상과 전문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9.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부합성 심의 지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심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소통체계 확대

다수의 대상계획이 수립되고 심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문과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의기관과 피심의 기관 간의 소통은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되기 어려운 여건이고 기관별 역할이 별도로 나뉘어 있어서 기관별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이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고 질의하고 논의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확한 정보와 사례 및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심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본 연구의 경우에는 검토지원기관으로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

」 시행령 개정('22.7.1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어떤 계획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비 지급 등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는 대상계획에 직접 계획수립자로 참여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어떤 계획에서 제외하고 포함할지에 대한 사전합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예비검토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관련 계획과 이행 부분,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관련 계획과 이행 부문,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및 환경오염관련 계획 부문에 기술적,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술한 것 같이 해당기관이 직접 수행 및 참여한 계획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계획인 경우에는 부합성 검토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 부합성 전문검토가 아닌 부문별 세부 전문내용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받아 참고하는 형태로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다. 예비검토 시행 사전 예고제 강화

예비검토의 경우 대상계획의 심의요청이 시작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대상계획이 진행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지원검토기관의 전문가들에 대한 요청과 사전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고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가 참여를 못 하거나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에서 대상계획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지하고 접수되는 대상계획의 일정을 조정하여 다수의 대상계획이 한꺼번에 접수되지 않도록 해서 예비 검토기관에서 무리없이 검토기간내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내 다수의 대상계획 검토가 요청되면 일정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검토 결과의 질도 나빠지고 향후 참여의사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0. 대상계획 수립 작성지침에 부합성 심의사항 추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회의 부합성 심의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관련 계획들은 기존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사항을 토대로 작성해야하고 작성

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은 계획별 작성 지침이나 안내서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다수의 물관련 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법령과 계획 작성 요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실제 부합성 심의를 하여 새롭게 수립하게 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물관련 계획들의 모든 작성지침이나 계획수립 조항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를 고려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물관련기본계획과 달리 별도의 목적과 특수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계획의 경우, 특히 이행계획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계획의 경우에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보다는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실행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제2절 제언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합성 개념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부합성 심의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실제 대상 계획별로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판별하여 검토기관별 부합근거 및 검토의견을 포함한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및 종합의견 제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운영 예산(안) 산출과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수립권자, 예비검토지원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합성 심의제도 운영 · 체계의 이해도 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부합성 심의 및 검토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및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1. 부합성 검토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물관리기본법」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변경할 경우, 국가계획과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해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부합성 심의는 물관리 관련 계획간 정책의 일관성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부합성 심의 및 평가 제도를 조사한 결과, 제도별로 평가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①상하계획간 목표와 수단, 전략의 일치성(consistency)을 판단하거나 ②제도 간의 일관성 및 상호연계성(congruence)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판단근거를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로 위임하거나 아니면 모든 항목에 객관적인 값을 제시하여 동일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일치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상위계획의 추진방향이나 세부 내용을 일부 반영 못 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다. 또한 일관성 및 상호연계성의 경우는 총괄적으로 일관성 있는 판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가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일치성을 중심으로 상위계획의 추진목표와 전략의 포함여부 등 문맥을 고려하는 소극적 심의 방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대상계획들이 국가계획과 같이 물관련 전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제한된 부문별 계획이기 때문에 수평적 정합성보다는 수직적 정합성에 근거하여 계획의 유사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합성의 표현 방식도 현재의 경우와 같이 정성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적합”, “부적합” 등에서 시작해서 “매우높은”, “높음”, “낮음” 등의 정도로 확대되고 보다 고도화 되어서 등급이나 점수화로 최종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예비검토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을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적 표현 등으로 구체적인 원인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담당자들이 종합 검토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

2.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개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1개에 대한 부합성 예비검토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비검토 및 부합성 심의가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예비검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실제 검토 및 작성을 통해 검증하고 전문검토기관간의 상호 의견수렴 및 수정작업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실제 검토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유역계획과 같이 전분야를 다루는 계획과 유역하수도 계획처럼 부문별 계획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예비검토의 진행을 통해 지속적인 이행과 경험의 피드백을 토대로 각 요소별 주요 사항과 평가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향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실질적 검토를 토대로 예비검토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본계획의 요소와 대상계획의 검토요소간의 차이로 인해 부합 및 미부합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미부합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마련이 각 계획별로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둘째, 대상계획에 대한 접수 일정 등이 명확하지 못해 지원검토기관의 사전 준비 및 관련 전문가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계획별 진행 상황을 사전에 체크하고 공유하고 대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검토기관별 전문분야 및 기관별 중점 검토 대상이 다름에 따라서 요소 평가에 대한 깊이와 검토내용의 수준 차이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관별

검토 안배와 함께 적절한 검토수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였다. 넷째, 부합 및 미부합에 대한 검토자의 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중장기 적으로는 미부합에 대한 적정범위와 적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수의 계획이 동시에 접수되어 추진될 때에는 취합과 종합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가 안돼서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우므로 최소한 간격을 두고 대상계획 검토 요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합성 검토 예산(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부합 여부 심의 대상 계획, 법정계획의 부합 여부 심의·의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예비검토 및 의견수렴, 지원 등의 목적에 따라 부합성 예비검토가 현재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구조를 고려한 총괄 예산(안)을 설정하였다. 사업시행 구조의 설계를 위해 고려한 안은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이 참여하는 방안과 기관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사업총괄기관의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기관별 의견을 포괄하여 종합 의견 수렴에 용이하고, 부합성 예비검토 심의를 위한 자료의 취합, 관리가 용이한 구조이며, 개별기관에 필요한 필수 인력, 사업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개별기관보다 예산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단, 개별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총괄기관의 관리 인력이 다수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사업 참여 비중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① 시나리오A(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② 시나리오 B(부합성 검토의견에 대한 총괄 취합, 의견 전달을 위한 역할을 총괄기관이 일부 일임 가정, 참여비율을 총괄기관만 110% 조정하여 재산정), ③ 시나리오 C(일부 기관 참여비중 경비 지급으로 가정[12], 재난연, 과학원 참여비율 30% 조정하여 재산정)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한편 부합성 검토 비용 산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적정 검토비와 검토 비용 지급 방안에 관한 사항이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산정 기준을 검토 시간을 고려한 비용으로 설정하여 제안하였다.

---

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기관 고유 업무 특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기관의 사업 형태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 없이 소요 경비만 지급한다고 가정해 두 기관의 참여비율을 30%로 조정하였다.

4. 부합성 심의·검토 설명회

부합성 심의 제도 운영 및 체계 이해도 제고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수립권자와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나누어 2회 진행하였으며, 계획수립권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낙동강 유역지원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 개최 결과, 현재 부합성 심의 절차가 이행 초기인 관계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전하게 결정하고 이행하여 최적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모두 동의하였고 향후 다수의 실제 심의 절차 진행과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체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및 예비검토 관련해서 심의서 작성요령, 부합성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양식과 절차 전달과 개선이 지속해서 진행되었지만, 실제 이행하는 기관 및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고 심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교류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다수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해의 폭과 전문성 및 경험의 차이점이 다수 있고 개념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잦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이해 수준을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2번의 설명회를 통해 심의 절차 및 방법의 일관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부함성 검토 가이드라인은 부합성 예비검토 수행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절차, 작성 원칙, 검토 범위를 포함하고 세부 작성 기준과 작성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검토지원기관(예비·전문검토기관)의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대한 명확성·일관성을 제공하고 부합성 예비검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진행된 예비검토 사례의 절차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

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요, 검토 및 작성 요령, 붙임 자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합성 예비검토 수행 및 작성에 있어 편의성,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작성된 본 가이드라인은 작성 당시 완료된 예비검토 보고서 3건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3건의 예비검토 작성을 통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고 추가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계속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진행될 각각의 계획의 특성에 맞춰 작성될 수 없기에 대상 계획별 절차 및 작성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다수의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사례 축척을 바탕으로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등 수정 및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제2절 제언: 부합성 심의 및 검토제도 개선방안

물관리일원화 후 다양한 부처와 부문에서 수립되어왔던 법정계획이 국가계획과 유역계획 중심으로 정비되는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통합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기반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어느 분야나 국가계획 또는 광역계획이 수립되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고질적 문제는 관련 하부 전략 또는 실행 계획들이 국가의 전략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와 일관성 없이 지역(또는 부문)의 특성이나 예산사항, 그리고 현황 문제 해결에 매몰되어 세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성 심의·의결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부합성 심의·의결 제도는 여전히 분산되어있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정책·계획 간 통합적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능으로, 그간 우리나라에는 물 관련 계획과 계획 간 부합성 검토 절차가 거의 부재했기 때문에 단계적,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현 부합성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고도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1) 부합성 검토에 대한 정의 명확화

부합성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논리적 무모순성을 의미하며 법 효력과 관련하여 상·하위

법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이 일관된 통일성 유지여부와 그 계획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지속가능한 이행과 상응하는 방식인지를 판단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다른 법률간의 부합성 이행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계획을 기준으로 하위계획을 검토하는 체계로 예비검토를 바로 추진해야하고 기수립된 부합성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치와 추진에 근접하는지 등 맥락을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하고 심의 과정의 진행을 통해 정의와 목표의 고도화 및 선진화에 대해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2) 부합성 심의 전과정에 대한 통합지침 마련

현재 대략적인 절차와 작성요령 및 검토 가이드라인 그리고 심의 과정에 대한 진행 경험이 있으나 심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지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각 과정별, 부분별 연계성 및 일치성, 일관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각 부분별로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체계를 단계별로 통합, 개선하면서 공통요소와 개별요소를 고려한 종합 지침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유사한 범위와 틀 안에서 부합성 심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부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기준, 방법의 표준화 필요

국내외 다른 사례와 같이 정성적 평가 방법을 포함하여 수치 및 등급,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정량적인 방법 등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성적인 판단은 전문성 등을 인정하여 다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매우 좋은 경우이나 동일한 내용과 계획요소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일관성과 재량의 폭이 크고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 요소별 주요 검토 범위와 내용의 범위를 최적으로 제시하고 원칙을 설정하여 표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4) 기본계획 요소별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한 범위 결정 필요

국가계획의 경우 10개의 계획요소를 모두 포함하나 다른 계획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며 실제 심의 결과도 그런 이유로 '해당없음'을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계획의 주요 계획요소별 주요 검토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자나 평가자, 심의 당사자들이 해당 내용이 대상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확정은 환경부를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부합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현재 국가계획 부합성 예비검토의 검토기관별 검토는 검토기관에서 지정된 담당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검토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지원단에 제출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문가의 부문별 관심도, 전문성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로 인해 검토 결과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을 때에는 향후 의견 반영시 적정한 수준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으로 제시할 경우를 고려해볼 수가 있으나 전문적 의견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검토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검토자의 의견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때 관련 행정처리와 내부 협의 등에 의해 추가로 검토 시간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 지정된 전문가가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마련하고 미부합 등의 판단시에는 그에 따른 의견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와의 연계 확대

국가계획의 부합성 검토와 동일하게 현재 물관리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부합성 심의제도가 준비 및 시행되고 있다. 비록 검토 수준과 내용 그리고 대상계획이 서로 다르지만, 심의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적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심의 관련 조직과의 연계성과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방법과 부합성 검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 검토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원단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소통과 정보의 교류, 주기적인 통합 회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대상 계획별 주요 체크사항 마련

동일한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동일한 지침에 따라 계획내용이 작성됨에 따라 주요 전략과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별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일한 계획을 검토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유사성 그리고 차별성 등을 쉽게 파악하여 부합성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검토시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필요 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각 전문기관별 작성된 예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보다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상계획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해당 없음"이나 "미부합"에 대한 검토시 적합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8)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교육 확대 및 홍보자료 마련

처음 제도가 이행되어 실질적 제도 이해와 절차의 체계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심의 및 검토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당사자간의 이해를 높여서 불필요한 지연사항을 최소화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준 향상과 전문성이 확대가 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9)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첫째, 소통체계 확대 방안이다. 다수의 대상계획,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에 따라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문과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이 만나서 정보 교류와 질의, 논의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확한 정보와 사례 및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심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어떤 계획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비 지급 등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예비검토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기관이 향후 예비검토에서 어떤 역학을 담당할지에 대한 관계기관별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검토 시행의 사전 예고제 강화이다. 대상계획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지원검토기관의 전문가들에 대한 참여와 사전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고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가 참여를 못 하거나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에서 대상 계획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지하고 접수되는 대상 계획의 일정을 조정하여 다수의 대상 계획이 한꺼번에 접수되지 않도록 해서 예비 검토기관에서 무리 없이 검토 기간내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최소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0) 대상계획 수립 작성지침에 부합성 심의사항 추가

대부분의 물관련 계획들은 기존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사항 및 작성 지침이나 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물관련 계획은 현재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전략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물관련 계획들의 모든 작성지침이나 계획수립 조항에 국가계획의 심의를 고려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달리 별도의 목적과 특수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계획은 국가계획보다는 유역계획 등 실행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1) 부합성 심의의결 평가 시점

현 부합성 심의의결 평가제도 상 심의요청서 제출 시점은 각 계획 별로 다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부합성 심의 요청은 피평가 계획의 협의가 모든 끝난 마지막 시점에 부합성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평가 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합성 심의를 재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 / 고 / 문 / 헌 /

[국내문헌]

국가물관리위원회(2021).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실행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

국토연구원(2021).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양석진(2009). 「정보공개법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외교부(2016). 「카리콤(CARICOM) 개황」

임현 외(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21 연차보고서」

전상환(2015).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 도시, 농촌, 도·농복합 기초지자체 적용을 중심으로」

정정길(2002).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조은설(2018). 「우리나라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산업 정책의 정책적 정합성 평가」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2020). 「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권고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질병관리청(202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환경부(2022).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국외문헌]

M Scobie(2015). 「Policy coherence in climate governance in Carribbean Samll Island Developing States」

OECD(2021), 「Applying Evaluation Criteria Thoughtfully」

OECD(2020). 「Recommend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2020). 「SELF-ASSESSMENT」

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2017). 「Climate Science Special Report: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Volume 1)」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기본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기본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4.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본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http://law.go.kr, 검색일: 2022.5. .
대한민국국회, “예산안과 결산 처리과정”, https://www.assembly.go.kr/, 검색일: 2022.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https://budget.na.go.kr:444/, 검색일: 2022.5.9.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2.5.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https://www.kistep.re.kr/, 검색일: 2022.5.9.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제도 안내”, https://www.eiass.go.kr/, 검색일: 2022.5.9.

부록

- 부록1. 「국토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부록2. 「국회법」 제84조
- 부록3. 부합성 심의 예비검토 주관기관 예산(안)
- 부록4. 부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안)

부록1 「국토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시행령 제8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8조의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8조의4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5.10

부록2 「국회법」 제84조

구분	제 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1항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제2항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4항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개정 2020. 12. 15.〉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항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검색일: 2022.5.4.

부록3 부합성 예비검토 주관기관 예산(안)

1. 사업총괄기관 주관 하에 전문가(기관) 참여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율(%)	특징
합계	500,000,000	(1+2+3+4+5)	100.0	
1. 인건비	285,566,221		57.1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연구진 인원 설정
- 책임연구원	15,969,724	6,654,052 × 1인 × 12개월 × 20%		
- 연구원	195,925,939	5,102,238 × 16인 × 12개월 × 20%		
- 연구보조원	73,670,558	3,410,674 × 9인 × 12개월 × 25%		
2. 경비	143,439,127		28.7	
가. 여비	5,336,000		1.1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국내여비	5,336,000			
· 책임연구원	591,000	197,000원(1박2일) × 1인 × 3회		
· 연구원	3,152,000	177,000원(1박2일) × 16인 × 1회		
· 연구보조원	1,593,000	177,000원(1박2일) × 9인 × 1회		
나. 유인물비	8,657,287		2.7	보고회 필요 문서 인쇄
- 최종보고서(200부)	1,457,287	내지: {6,890원+(140×15)}×150매 표지: {12,150원+(157×15)}×7.5		
- 자료복사비	12,000,000	40원/면, 25,000매 × 12월		
다. 전산처리비	4,185,840		0.8	
- 시스템사용료	3,136,920	261,410원/월 × 12월		
- 전산소모품	1,048,920	87,410원/월 × 12월		
라. 재료비	17,000,000		3.4	기자재 구입 산정
- 사무용품비	12,000,000	1,000,000원/월 × 12월		
- 기자재구입비	5,000,000	500,000원/월 × 10월		
마. 회의비	94,000,000		18.8	검토비용 포함
- 보고회 자문비	3,000,000	200,000원 × 5인 × 3회		
- 예비검토비용	50,000,000	1,000,000원/건 × 5인/기관 × 10회/건		
- 사전·후 예비검토 회의자문	20,000,000	200,000원 × 5인 × 20회		
- 회의부대비용	21,000,000	30,000원 × 28인 × 25회		
바. 임차료	7,200,000		1.4	회의실 대여
- 임차료	7,200,000	600,000원 × 12회		
사. 교통통신비	2,260,000		0.5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시내교통비	1,560,000	20,000원 × 26인 × 3회		
- 전신전화사용료	525,000	43,750원/월 × 12월		
- 우편료	175,000	14,580원/월 × 12월		
3. 일반관리비	25,540,107	(인건비+경비)의 5.95%(6% 이내)	5.1	
4. 타 기관 예산	-			
3. 부가가치세	45,454,545		9.1	

2. 기관별 시행

① 시나리오 A : 개별 기관 부합성 예비검토 사업 수행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율 (%)	특징
합계	1,000,000,000	(1+2+3+4+5)	100.0	
1. 인건비	122,118,310		12.2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연구진 인원 설정
- 책임연구원	15,969,724	6,654,052 × 1인 × 12개월 × 20%		
- 연구원	97,962,969	5,102,238 × 8인 × 12개월 × 20%		
- 연구보조원	8,185,617	3,410,674 × 3인 × 12개월 × 20%		
2. 경비	37,279,247		3.7	
가. 여비	7,306,000		0.7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국내여비	7,306,000			
· 책임연구원	985,000	197,000원(1박2일) × 1인 × 5회		
· 연구원	4,728,000	177,000원(1박2일) × 8인 × 3회		
· 연구보조원	1,593,000	177,000원(1박2일) × 3인 × 3회		
나. 유인물비	5,297,287		0.5	보고회 필요 문서 인쇄
- 최종보고서(200부)	1,457,287	내지: {6,890원+(140×15)}×150매 표지: {12,150원+(157×15)}×7.5		
- 자료복사비	3,840,000	40원/면, 8,000매 × 12월		
다. 전산처리비	3,075,960		0.3	
- 시스템사용료	2,376,000	198,000원/월 × 12월		
- 전산소모품	699,960	58,330원/월 × 12월		
라. 재료비	8,000,000		0.8	기자재 구입 산정
- 사무용품비	5,000,000	416,660원/월 × 12월		
- 기자재구입비	3,000,000	250,000원/월 × 12월		
마. 회의비	10,200,000		1.0	검토비용 제외
- 보고회 자문비	3,000,000	200,000원 × 5인 × 3회		
- 회의부대비용	7,200,000	30,000원 × 12인 × 20회		
바. 임차료	1,500,000		0.2	회의실 대여
- 임차료	1,500,000	500,000원 × 3회		
사. 교통통신비	1,900,000		0.2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시내교통비	1,200,000	20,000원 × 12인 × 5회		
- 전신전화사용료	525,000	43,750원/월 × 12월		
- 우편료	175,000	14,580원/월 × 12월		
3. 일반관리비	8,693,352	(인건비+경비)의 5.45%(6% 이내)	0.9	
4. 타 기관 예산	723,000,000	타 기관 예산	74.1	
3. 부가가치세	90,909,091		9.1	

② 시나리오 B : 부합성 검토의견에 대한 총괄 취합, 의견 전달을 위한 역할을 총괄기관이 일부 일임 가정, 참여비율을 총괄기관만 110% 조정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율(%)	특징
합계	1,000,000,000	(1+2+3+4+5)	100.0	
1. 인건비	138,489,545		13.8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연구진 인원 설정
- 책임연구원	15,969,724	6,654,052 × 1인 × 12개월 × 20%		
- 연구원	97,962,969	5,102,238 × 8인 × 12개월 × 20%		
- 연구보조원	24,556,852	3,410,674 × 3인 × 12개월 × 25%		
2. 경비	37,169,247		3.7	
가. 여비	7,306,000		0.7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국내여비	7,306,000			
· 책임연구원	985,000	197,000원(1박2일) × 1인 × 5회		
· 연구원	4,728,000	177,000원(1박2일) × 8인 × 3회		
· 연구보조원	1,593,000	177,000원(1박2일) × 3인 × 3회		
나. 유인물비	5,297,287		0.5	보고회 필요 문서 인쇄
- 최종보고서(200부)	1,457,287	내지: {6,890원+(140×15)}×150매 표지: {12,150원+(157×15)}×7.5		
- 자료복사비	3,840,000	40원/면, 8,000매 × 12월		
다. 전산처리비	3,075,960		0.3	
- 시스템사용료	2,376,000	198,000원/월 × 12월		
- 전산소모품	699,960	58,330원/월 × 12월		
라. 재료비	8,000,000		0.8	기자재 구입 산정
- 사무용품비	5,000,000	416,660원/월 × 12월		
- 기자재구입비	3,000,000	250,000원/월 × 12월		
마. 회의비	10,200,000		1.0	검토비용 제외
- 보고회 자문비	3,000,000	200,000원 × 5인 × 3회		
- 회의부대비용	7,200,000	30,000원 × 12인 × 20회		
바. 임차료	1,500,000		0.2	회의실 대여
- 임차료	1,500,000	500,000원 × 3회		
사. 교통통신비	1,790,000		0.2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시내교통비	1,200,000	20,000원 × 12인 × 5회		
- 전신전화사용료	440,000	36,660원/월 × 12월		
- 우편료	150,000	12,500원/월 × 12월		
3. 일반관리비	10,432,117	(인건비+경비)의 5.94%(6% 이내)	1.0	
4. 타 기관 예산	723,000,000	타 기관 예산	72.3	
3. 부가가치세	90,909,091		9.1	

③ 시나리오 C : 일부 기관 참여비중 조정, 경비 지급만으로 가정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율(%)	특징
합계	1,000,000,000	(1+2+3+4+5)	100.0	
1. 인건비	199,749,457		20.0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연구진 인원 설정
- 책임연구원	15,969,724	6,654,052 × 1인 × 12개월 × 20%		
- 연구원	146,944,454	5,102,238 × 12인 × 12개월 × 20%		
- 연구보조원	36,835,279	3,410,674 × 6인 × 12개월 × 15%		
2. 경비	48,986,127		4.9	
가. 여비	11,263,000		1.1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국내여비	11,263,000			
· 책임연구원	985,000	197,000원(1박2일) × 1인 × 5회		
· 연구원	7,092,000	177,000원(1박2일) × 12인 × 3회		
· 연구보조원	3,186,000	177,000원(1박2일) × 6인 × 3회		
나. 유인물비	5,297,287		0.5	보고회 필요 문서 인쇄
- 최종보고서(200부)	1,457,287	내지: {6,890원+(140×15)}×150매 표지: {12,150원+(157×15)}×7.5		
- 자료복사비	3,840,000	40원/면, 8,000매 × 12월		
다. 전산처리비	4,185,840		0.4	
- 시스템사용료	3,135,920	261,410원/월 × 12월		
- 전산소모품	1,048,920	87,410원/월 × 12월		
라. 재료비	10,000,000		1.0	기자재 구입 산정
- 사무용품비	6,000,000	500,000원/월 × 12월		
- 기자재구입비	4,000,000	333,333원/월 × 12월		
마. 회의비	14,400,000		1.4	검토비용 제외
- 보고회 자문비	3,000,000	200,000원 × 5인 × 3회		
- 회의부대비용	11,400,000	30,000원 × 19인 × 20회		
바. 임차료	2,000,000		0.2	회의실 대여
- 임차료	2,000,000	500,000원/회 × 4회		
사. 교통통신비	1,840,000		0.2	관련 업무 인원 감안 설정
- 시내교통비	1,140,000	20,000원 × 19인 × 3회		
- 전신전화사용료	525,000	43,750원/월 × 12월		
- 우편료	175,000	14,580원/월 × 12월		
3. 일반관리비	14,355,325	(인건비+경비)의 5.77%(6% 이내)	1.4	
4. 타 기관 예산	646,000,000	타 기관 예산	64.6	
3. 부가가치세	90,909,091		9.1	

부록4 부합성 예비검토 가이드라인(안)

부합성 예비검토 가이드라인(안)

2022.9

KEI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목 차

Ⅰ. 개요

1. 목적 ····· 1

2. 법적 근거 ····· 1

3. 부합성 심의 절차 ····· 2

4. 검토지원기관 ····· 5

5. 부합성 예비검토 대상계획 ····· 6

Ⅱ. 검토 및 작성 요령

1. 원칙 ····· 8

2. 예비검토 절차 ····· 9

3.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 12

4. 유의 사항 ····· 24

[붙임1] 분류표 예시 ····· 27

[붙임2] 부합성 심의 요청서 예시 ····· 29

[붙임3]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전문기관) ····· 30

[붙임4]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지원기관) ····· 31

Ⅰ. 개요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이행 및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에 있어 필요한 절차, 작성 원칙, 검토 범위, 세부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하여 “예비검토 지원·전문기관”의 부합성 예비검토 진행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명확성과 실효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본 가이드라인 적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계획에 한정함

2. 법적 근거

가.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이행

1) 「물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19.6월) 이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21.6월)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는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물관리 관련 계획과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호, 제5호에 따라 국가위는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기능을 가짐

2) 국가위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함

- 「기본법」 제27조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며 수립·변경시 부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함

나. 물관리 관련 계획의 조정

- 「기본법」 제27조4항에 따라 국가위는 부합성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획수립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부합성 심의 절차

가. 심의 절차

1) 부합성 심의 요청서 제출

- (주체)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절차) 계획수립권자는 부합성 심의 대상계획의 개요, 자체 평가의 결과 등을 포함한 물관리 관련 계획(안) 및 부합성 심의 요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원단은 이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에게 보완 요청

2) 부합성 심의 추진계획 보고

- (주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물관리위원회
- (절차)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은 심의 추진계획을 물관리위원회에 서면(공문) 보고

3)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 (주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예비검토 지원기관 → 지원단
- (절차) 심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예비검토를 완료하여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다만, 다양한 분야의 다수 계획을 짧은 기간 내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지원(예비검토 지원 및 전문기관)을 받아서 추진함

4) 심의 안건 작성 및 사전 검토

- (주체)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 (절차) 계획분과위원회는 예비검토 보고서 등을 활용해 심의 대상 계획(안)의 국가·유역계획과 부합성 사전 검토 및 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안건을 마련.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이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물관리위원회에 상정

5)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 (주체) 물관리위원회
- (절차)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며 심의·의결 일자 7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함께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의결 시 결과는 '부합함/부합하지 아니함(조정 요구)' 중에서 결정
- (조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 및 계획수립권자에게 통보

6) 조치 결과 제출

- (주체)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 (절차) 계획수립권자는 부합성 심의·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대상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조치계획(조치 결과)을 수립. 계획의 수립·공표 전 물관리위원회에 계획의 최종본 제출
- (조치) 지원단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 물관리위원회에 송부

※ 부합성 심의는 전체 90일 이내로 이행을 원칙으로 함

절 차	주 체	소요기간 (누적)
1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계획수립권자	-
⇩ 요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 1-1 부합성 심의요청서 보완 요청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계획수립권자	-
⇩	⇩	⇩
2 부합성 심의 추진계획 보고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물관리위원회	접수 후 즉시
⇩	⇩	⇩
3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검토지원기관)	20일(20일)
⇩	⇩	⇩
4 심의 안건 작성 및 사전 검토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30일(50일)
⇩	⇩	⇩
5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 부합함 의결 시 : 절차 종료 * 부합하지 아니함 의결 시 : 계획 조정 요구	물관리위원회	10일(60일)
⇩ 계획 조정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	⇩
⇩ 5-1 결과 조정 요청 및 재심의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20일(80일)
⇩	⇩	⇩
6 조치 결과 제출	계획수립권자 → 물관리위원회	10일(90일)

<그림 1> 부합성 심의 절차

나.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1)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목적

- 심의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 자료로 작성
- 다양한 분야의 다수 계획을 짧은 기간 내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

2)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은 부합성 심의 절차의 3단계(3)에 해당됨
-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은 부합성 심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함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서 예비검토 지원기관에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검토지원기관(예비검토 지원 및 전문기관)은 전문적 검토를 위해 현지 조사, 추가자료 요청 등을 통해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 지원단에 송부하고 지원단은 20일 내에 최종 예비검토 보고서 완료

3) 검토지원기관의 부합성 전문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 지원단으로부터 예비검토 요청이 접수된 이후 예비검토 지원기관(총괄기관)을 중심으로 세부 예비검토 전문기관의 기관별 검토를 토대로 14일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결과를 송부

4. 검토지원기관

가. 기관구성 및 역할

- 검토지원기관은 ①예비검토 지원기관과 ②예비검토 전문기관으로 구성됨

1) 예비검토 지원기관

- 예비검토 지원기관(총괄기관, 현재 KEI)은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의 총괄적 역할* 및 행정지원**을 수행함

* 예비검토 전문기관(세부검토기관) 보고서 취합, 정리 및 총괄의견 작성, 검토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예비검토 전문기관 연락, 자료 및 정보제공, 회의진행 등을 포함하여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수행

2) 예비검토 전문기관

- 기관별 전문성을 토대로 해당 계획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과정에 필요한 회의 참여

나. 대상 검토지원기관

1) 예비검토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

- 2022년 기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담당

2) 예비검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6개 기관으로 구성됨

* 단, ‘22.7.19일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도 추가 대상이 됨에 따라 향후 검토추진 예정임

5. 부합성 예비검토 대상계획

- 국가위 부합 심의 대상계획을 원칙으로 함

※ 단, 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일임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국가위의 부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할 대상계획은 17종, 총 58개 법정계획임

※「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정계획 17종

- 심의 대상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1> 부합성 심의 대상계획(안)

종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	담당 전문기관(안)
1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4)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2	4대강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4)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3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댐관리기본계획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	물 재이용 기본계획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7	대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8	수생태계 복원계획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9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10	사방사업 기본계획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	국가수도기본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1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1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14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15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17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Ⅱ. 검토 및 작성 요령

1. 원칙

1) (검토 방향) 부합성 검토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계획요소를 기준으로 소극적 검토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1)]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계획요소, 세부방향, 적용방안, 추진과제 등의 포함 및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부합” 및 “미부합” 판단

· 물관리기본계획 요소와 내용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

<표 2> 예비검토 시 부합성 판단 기준

- **(부합)** 검토대상 계획에 국가계획의 계획요소와 관련된 세부 방향, 적용 방안 또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미부합)** 검토대상 계획에 국가계획의 계획요소와 관련된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 방향, 적용방안 또는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지 않아 미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의견에 미부합 사유를 요약 제시 - **(해당없음)** 검토대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판단

2) 부합성 검토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타 계획간의 부합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함

- 검토대상 계획 외에 국가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하위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부합한 것으로 검토

3) 부합성 검토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검토대상계획“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다른 관련 자료는 참고로 활용함

1)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에서 마련한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방향(안)>에 따라 수행

- 계획수립기관이 제출한 부합성 심의요청서는 참고로 활용함
- 예비검토 지원기관 및 예비검토 전문기관은 부합성 심의요청서를 기준으로 예비검토를 수행하지 않으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문을 기준으로 검토대상계획의 부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함

2. 예비검토 절차

가. 예비검토 절차

-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절 차	주 체	소요 기간(합계)
대상계획 사전검토 요청	지원단 → 예비검토 지원기관	신청전
↓		
대상계획 검토 사전 스크리닝	예비검토 지원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	3~4일 (+3일)
↓		
예비검토 사전회의 (1~2회)	예비검토 지원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	6~7일 (+7일)
↓		
예비검토 요청	지원단 → 예비검토 지원·전문기관	사전회의 후 즉시
↓		
예비검토 수행	예비검토 지원기관 예비검토 전문기관	10일 (10일)
↓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예비검토 지원기관	3~4일 (13~14일)
↓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제출	예비검토 지원기관 → 지원단	4일 (14일)

<그림 2> 부합성 예비검토 절차

나. 예비검토 세부 절차

1) 계획수립기관의 부합성 심의요청서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 접수되기 전에 부합성 사전검토를 알림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예비검토 지원기관
- 지원단에서 검토대상 계획 관련 자료(보고서 등) 및 일정을 사전에 메일 등으로 예비검토 지원기관에 송부

2) 사전검토 요청된 자료를 기반으로 예비검토 지원기관(총괄기관)에서 관련 예비검토 전문기관 섭외 및 담당자 선정 요청

- 예비검토 지원기관 → 예비검토 전문기관
- 검토대상 계획 관련 자료 및 검토 추진 일정 송부

3) 예비검토 전문기관 담당자 지정 및 통보, 사전 내용 스크리닝 진행

- 예비검토 전문기관 → 예비검토 지원기관
- 검토담당자 확정 및 검토대상 계획 사전 검토

4) 예비검토 지원기관 주관으로 전문기관과 사전회의 진행

- 예비검토 지원기관 → 예비검토 전문기관
- 부합성 검토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설명
- 관련양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전달
-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 및 전달

※ 참석 가능여부, 추가 설명 등에 따라 1~2회 추가 진행 가능

5) 예비검토 시행

- 예비검토 지원기관은 지원단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해당 예비검토 전문기관으로 ‘부합성 평가의 계획요소 분류표’,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1]'을 포함하여 예비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함

6) 예비검토 전문기관은 10일 이내의 검토기간 동안 대상계획의 부합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각 해당 양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 작성

7) 예비검토 지원기관은 각 전문기관이 정해진 기간내 전문검토 보고서(예비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 이행

- 기관별 송부일 확인을 통한 보고서 취합 계획 마련

※ 기관별 검토기간은 공문접수 후 10일 이내임

8) 예비검토 전문기관은 작성보고서를 지원기관으로 제출

- 송부기관과 접수기관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메일 회신 혹은 사전 연락 필수

※ 기관별 필요시 해당 발송 공문 등 이행 가능

9) 예비검토 지원기관의 보고서 취합 및 종합 의견 작성

- 기간 내 종합될 수 있도록 하며 취합시 오류 및 문제점 발생시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수정 및 보완 여부 확인

10) 종합보고서(전문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최종 점검

- 취합, 정리, 종합된 보고서에 대한 지원·전문기관간 협의

- 주요 쟁점, 미부합 판단 등 주요 사항은 지원·전문기관간 협의를 통해 설명 및 보완, 권고 가능함

11) 예비검토 지원기관은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완성본을 붙임자료로 공문과 함께 지원단에 발송

1) 22'년 상반기에서는 "예비검토 보고서 및 양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2'년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이 수행한 검토사항과의 혼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및 양식"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최종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에 대한 지원단의 보완 또는 문의 사항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 후, 반영결과에 대한 지원단 송부

3.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절차	세부내용	참고사항
사전 회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전문기관 담당자 참석 필수
부합성 검토 자료 및 작성 양식 확인	(필수자료)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보고서) 계획요소 분류표(엑셀) 대상 계획 보고서 부합성 심의 요청서 (보고서 또는 엑셀)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 부합성 심의 추진 일정(안)	* 전문기관은 필수자료 외에도 추가자료 필요시 지원기관에 요청가능 * 지원기관은 필요자료 지원단에 요청 및 확보된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
계획요소 확인	기본계획 분류표 검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검토 * 계획요소 분류표 활용
대상 계획 검토	부합성 심의 요청서 검토	* 대상 계획 보고서(한글)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 예비검토 의견 ↓ 부합성 검토대상 항목 체크	전문기관, 지원기관 동일하게 이행
보고서 송부	전문기관 → 지원기관(총괄기관)	메일 또는 공문으로 송부
종합의견 작성	[붙임1] [참고자료] ↓ 계획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 종합 의견 ↓	예비검토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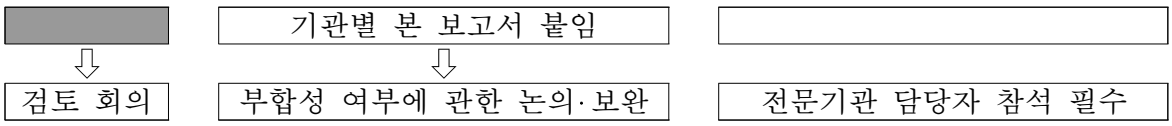

<그림 3>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가.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양식 확인

-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1]은 지원단에서 공문으로 제공하며 지원기관(총괄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양식을 전문기관에 제공함
-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 유무를 확인함

※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요청시 별도 파일로 제공됨

<표 3> 보고서 작성시 필수자료

번호	자료명	공문첨부 문서	비고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X	보고서
2	계획요소 분류표	○	엑셀자료
3	부합성 대상계획 보고서	○	보고서
4	부합성 심의 요청서	○	보고서, 엑셀
5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	○	
6	부합성 심의 추진 일정(안)	X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관련 자료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계획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

· 형태: 보고서(한글 또는 pdf)

-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계획요소 분류표(이하,

1) '22년 전반기에는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함

계획요소 분류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평가요소를 엑셀 형태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제공(계획 세부 요소 확인 가능)

· 형태: 엑셀([**붙임1**] 참고)

- 부합성 평가시에는 “계획요소 분류표”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 분류표에 직접 작성하지 않고 검토 보고서에 바로 작성 가능

<표 4> 부합성 평가 계획요소 분류표(예시)

구분	대분류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제1차 국가계획	국가계획 쪽수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추진 과제	1.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 2030년 목표 ·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수생태계 건강성확보, 종 다양성 회복, 서식처 복원에 보다 힘쓰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73
	1.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전략 1)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75
	1.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전략1	(정책목표) 하천, 호소의 목표 수질 달성률을 약 10%p 이상 개선			75
	1.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전략1	1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가축분뇨 관리 체계 선진화		75
	1.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전략1	1	1	• 가축분뇨 퇴·액비, 화학비료의 과잉 살포에 따른 지표수·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양분관리제 도입 추진	
	1. 물환경의 자연성회복	전략1	1	2	• 가축사육시설 허가제도 개선 및 가축분뇨 발생-처리-배출 관리 강화 - 가축사육시설 허가 시 발생 분뇨에 대한 처리방안 및 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정보 확대 및 실효성 확보	

2) 부합성 대상계획 관련 자료

- 대상계획 보고서 : 대상계획의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

· 형태: pdf 또는 한글

- 대상계획의 “부합성 심의 요청서(보고서)” 또는 “부합성 평가의 계획요소 분류표(엑셀)”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대비 대상계획의 부합성에 대해 계획수립기관이 검토한 내용으로 검토항목 선정과 적합여부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부합성 심의 요청서(보고서) **[붙임 2]** 참조

3)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

- 전문검토 보고서 구성

· 전문기관 양식(**[붙임 3]**)과 지원기관 양식(**[붙임 4]**) 구분

-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양식 구분

·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가 기본 양식이며 전문기관이 작성한 전문검토 보고서를 지원기관이 종합정리하여 최종 제출함

· 전문기관 검토보고서 : 전문기관이 기관별로 작성

※ 예비검토의견,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붙임(검토대상 항목)으로 구성됨

· 지원기관 검토보고서 : 전문기관 검토보고서 종합 보고서

※ 종합의견,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붙임1, 참고자료(계획요소별 전문기관 검토 내용), 붙임2(전문기관이 작성한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표 5> 부합성 심의요청서 및 전문검토 보고서 내용 비교

구분	부합성 심의요청서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기관	계획수립기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
보고서 내용	자체평가 부합 여부 결과	예비검토 결과, 의견
	· 계획명, 수립기관, 계획기간 · 목적, 범위, 주요 내용 등	계획요소별 세부내용
	자체평가 부합 여부 결과	· 계획요소별 각 검토기관 결과 및 의견

	(근거 및 기타의견)	· 기관별 전문검토 보고서(원문)

나. 국가물관리계획의 부합성 평가 계획요소 확인

1) 분류표로 제공되는 부합성 평가 계획 요소 확인

- 분류표([붙임 1])에 기본계획 순서대로 제공하는 국가계획의 평가 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요소와 부분만을 선정함
- 필요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대상계획에 대한 개요, 내용, 추진사항 등에 대한 내용 확인

2) 기본계획의 분류표로 제공되는 필수 검토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필수 검토항목

구분	항목
제1장 계획의 개요	수립 배경, 성격, 기본원칙 등
제2장 물관리 여건 및 전망	5. 203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제3장 계획의 비전, 목표, 혁신 방향	2030 비전, 목표, 3대 혁신 정책방향
	2.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방향의 중점과제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추진과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제5장 계획의 이행방안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4.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3) 기본계획 분류표 평가 계획요소를 활용한 검토 대상계획 검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평가 계획요소를 확인하면서 대상 계획내 요소 유무 확인 및 내용의 적합성 검토

※ 대상계획 심의 요청서 및 분류표를 참고하여 검토

4) 기본계획 분류표에 심의 대상계획 요소 내용 작성

- 검토 대상계획의 내용 중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계획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면 분류표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페이지를 기록

- 관련 내용이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작성

※ 분류표 내 직접 작성 후 보고서로 옮겨 작성하는 방법은 개인의 편의성에 따른 선택사항으로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님

다.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1)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1] 및 작성 우선순위 확인

- 제공되는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 **[붙임3]**를 선정함

· 종합의견이 포함된 **[붙임4]**양식에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붙임4] 양식은 총괄기관이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양식

- 전문검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①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 ② 종합의견 중, 예비 검토 결과 → ③종합의견 중, 부합성 예비검토 의견 ④붙임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서의 맥락과 우선순위, 작성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목차순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제안함

1) '22년 상반기에는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으로 이행됨

<표 7>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전체 구성

목차		작성기관
1. 예비 검토 의견	(1) 예비검토 요약	전문기관
	(2) 예비검토 주요 내용	
2.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11) 기타	
붙임1. 부합성 검토대상 항목		
붙임2~6.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전문기관 1~5)		
1. 종합 의견	(1) 부합성 예비검토 결과	지원기관
	(2) 부합성 예비검토 의견	
2.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2)물수급 및 수질 전망	
	…	
	(11) 기타	
붙임1. [참고자료] 계획 요소별 전문기관 검토 내용		
붙임2. 전문기간의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전문기관 1 ~ 6)		

2) 전문기관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① 제공되는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1] [붙임3]을 선택함

② 예비 검토 의견 작성

- 예비검토 요약

· 계획명, 기관명, 계획기간 작성 (부합성 심의요청서 참고)

· 계획용소별 예비검토 세부내용을 근거로 판단 기준에 맞추어 계획 요소 항목 당 부합성 결과 작성

※ 단, 미부합 포함시 미부합으로 표시를 원칙으로 함

· 판단시 근거를 명확하고 간략히 기재하며 특히, 미부합인

1) '22년 전반기에는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으로 이행됨

경우에는 권고 및 기타사항 포함을 작성함

<표 8> 예비검토 요약 작성 예시

부합성 평가의 계획 요소	검토 의견 작성 예시
(1)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부합 (유역 단위의 효과적 생활계 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4)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미부합 (유역 차원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에 관해 내용 보완 필요)

- 예비검토 주요 내용 작성

· 예비검토 요약의 계획요소별 검토의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계획요소별 내용과 부합성 여부 작성

· 계획요소별 부합성 여부 판단 내용 작성

<표 9> 예비검토 주요 내용 작성 예시

계획요소별 검토의견
(1) 예비검토 대상 계획은 유역 단위의 효과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에 부합함**

③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작성

- 엑셀 분류표 또는 한글 보고서 양식에 작성하는 경우로 구분

- 분류표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

· 분류표(excel sheet)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각 계획요소에 해당하는 국가계획, 검토 대상계획의 내용을 요약정리, 단 해당 페이지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함

· 요약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부합/미부합/해당없음을 결정하고 구체적 판단 근거와 사유 작성

· 엑셀에 정리된 최종 검토 내용을 한글 보고서화

- 분류표에 작성하지 않고 보고서 양식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

·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한글 양식)를 선택함

· 기본계획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서 검토대상 계획을 함께 검토 및 작성. 단, 해당 페이지 기재

· 기본계획에 상응하는 검토대상 계획이 없을 시 '관련 내용 없음' 또는 빈칸으로 작성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의 경우는 상하계획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 및 부합/미부합/해당없음에 대한 판단을 작성하고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표 10> 부합성 여부 판단 예시

기본계획 요소	대상계획 요소(판단 근거)	판단
[예시1] 유역하수도정비계획(낙동강중류)(수질전망) 2030년 낙동강 중권역 22개 중 12개 중권역에서 목표기준 달성(p.52-53)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2040년 수질 및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도 분석·제시	부합
[예시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서해남부)(혁신정책) 물순환 통합·연계 체계 구축 및 통합물관리 계획·제도 등 정비(p.61-66)	○유역하수도 시설계획 및 통합관리계획 제시	
[예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서해남부)(자연성 회복) 대규모 하수처리장 중심으로 고도처리 등 성능 향상 및 수질기준 강화(p.76)	○최대성능 수준으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목표수질 달성 불가능. 방류수수질기준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미부합
[예시1] 유역하수도정비계획(낙동강중류)(전략1)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대상계획은 축산계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음	해당 없음

가축분뇨 관리 체계 선진화(p.76)		
[예시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서해남부)(수질전망) 2030년 영산강(8개)-섬진강 중권역(9개) 중 5개 및 9개 중권역에서 목표 기준 달성(p.52-53)	○대상 계획의 중권역(와탄천, 신안군, 영암방조제, 진도)은 국가계획의 수질 전망 대상 중권역에 해당하지 않음	

④ 부합성 검토대상 항목 작성

- 붙임1, 양식을 선택함

· (작성 목적) 대상 계획의 계획요소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검토와 주요 검토항목 선정을 위해 작성

- 부합 및 미부합 등 검토 대상 요소에 대해서는 O로 표시

- 해당없음으로 검토 대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X로 표시

<표 11> 부합성 검토대상 항목표 예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계획 요소		심의 요청서 검토 항목	예비 검토 항목
제2장 물관리 여건 및 전망	2030 물수급 전망	×	×
	2030 수질 전망	×	×
제3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비전	○	○
	목표	○	○
	3대 혁신 정책	○	○
제4장 분야별 전략 및 추진과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전략 1)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	○
	(전략 2)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	×
	(전략 3)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
	(전략 4) 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물 문화 활성화	×	×
	(전략 5) 물환경 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	×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전략 1) 물 관련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	×
	(전략 2)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	×	×
	(전략 3) 국내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계획 요소		심의 요청서 검토 항목	예비 검토 항목
	(전략 4)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	×	×
제5장 계획의 이행 방안 3.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	○	○
	물 관련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	○
	다양한 주체 간의 물 관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노력	○	○

3) 예비검토 지원기관(총괄기관)의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작성

① 제공되는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1] [붙임4]을 선택함

② 종합의견 작성

- 부합성 예비검토 결과

· 계획명, 기관명, 계획기간 등 작성

※ 부합성 심의 요청서 참고하여 해당 내용 작성

· 부합성 평가 결과에 부합, 미부합, 해당없음의 평가수를 표기하고 비고에 판단 근거를 간략하게 기술

<표 12> 종합의견 결과 작성 예시

부합성 평가의 계획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비고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0, 해당없음0)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게 작성함

- 부합성 예비검토 의견

· 종합의견 : 검토의견을 토대로 총평, 미부합 요소 및 사유, 기타

1) '22년 상반기에는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대신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로 표기하고 이행함

의견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다른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재서술

· 검토의견 : "전문기관의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을 토대로 계획요소별로 부합·미부합·해당없음 여부와 판단 근거를 간략하게 기술. 검토기관별 견해가 다른 경우 각각의 내용을 모두 기재

· 기타의견 : 검토의견 중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종합

③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작성

- 기관별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서술

· 'One Fails all Fail' 원칙에 따라 "미부합"이 하나라도 포함 시에는 미부합으로 최종 판단

기관 A	기관 B	기관 C	최종 판단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미부합	부합	미부합
부합	미부합	해당없음	미부합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합	부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④ 붙임1.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지원기관 검토 내용 작성

- 부합성 심의 요청서의 계획수립권자 자체평가 내용 작성

· 국가계획내용, 검토대상 계획 내용, 검토 의견 포함

· 검토 의견이 없다면 '-' 표시

- 전문기관별 부합성 검토의견 작성

· 검토 의견은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단, 계획수립권자 → 지원기관 → 전문기관 순으로 작성

· 기관별 부합성 여부와 판단 근거 작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표 13> 계획요소별 전문 예비검토기관 검토 내용 작성 예시

구분	국가계획 내용	낙동강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내용	검토 의견	검토기관
3대 혁신 정책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p.61-66)	통합관리센터(1개) 및 지역관리센터(4개)로 구성된 유역하수도 통합운영·관리방안(p.9-38~127)	○부합 -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2040년 수질 및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도를 분석·제시	대구청 (계획수립 권자)
			○부합 - 물순환 과정 중 하수도 부문에 대한 유역 차원의 시설계획 및 통합관리계획 제시	KEI
			○부합 - 물순환 과정 중 유역하수도 시설계획 및 통합관리계획 제시	KICT

⑤ 붙임2. 전문기관별 검토 보고서를 붙임

- 전문기관별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붙임

· (작성예시) 붙임2.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한국환경연구원)

4. 유의 사항

1) 각 기관별 해당 계획별 담당자 사전 지정

- 기관별 내부 논의를 통해 계획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신속한 검토가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별된 담당자 관련 정보 제공과 연락체계 마련 필요

2) 부합성 검토 기간의 엄수

-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 기간이 총 20일이며 이중 14일내로 검토지원기관의 전문검토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검토는 10일내로 검토 및 보고서 제출

3)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를 기반한 부합성 평가 이행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취지와 목표, 비전, 전략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

4) 부합성 평가시 미부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

- 미부합으로 판별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

[붙임1] 분류표 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점과제	세부과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국가계획 쪽수	심의 대상 계획 내용	심의 대상계획 쪽수
제3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2030 비전, 목표, 3대 혁신 정책방향						57	-	
	제3장.	■ 비 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에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인간 사회의지역 간, 소득수준 간 물복지 격차의 해소를 추구 · 생명의 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하여 인간과자연 모든 삶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관리					57		
	제3장.	■ 목 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물관리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기본목표 1) 유역 공동체(인간과 자연) 모두의 건강성 증진 · (기본목표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으로 미래 세대 물 이용 보장 · (기본목표 3)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57		
	제3장.	■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유역 물관리 및 통합물관리 체계 구현을 위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정책					57	-	
	제3장.	1.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과 하구·연안, 수량·수질·수생태, 가뭄·홍수, 물관리와 국토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물순환 건전성 제고					57	-	
	제3장.	2.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 유역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확립·확산으로 소통 중심의 시민체감형 물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물로 인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57	-	
	제3장.	3.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 물관리 전 과정의 탄소 저감,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물관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전 과정의 취약성 최소화					57	-	
	제3장.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방향의 중점 과제					61		
	제3장.	3대 혁신 정책	혁신1	혁신 ●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62	-	
	제3장.	3대 혁신 정책	혁신1	중점과제 1.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62	-	
	제3장.	3대 혁신 정책	혁신1	중점과제 1	-1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	62		
	제3장.	3대 혁신 정책	혁신1	중점과제 1	-2	도시 및 도시외 지역 맞춤형 물순환 관리 모델 발굴·확산	62		
	제3장.	3대 혁신 정책	혁신1	중점과제 1	-3	'물 계정' 구축 등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선진 분석기법 도입	63		
	제3장.	3대 혁신 정책	혁신1	중점과제 1	-4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63		

[붙임2] 부합성 심의 요청서 예시

부합성 심의 요청서

- 대상 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

2022. 02. 00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1.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요약)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개요

- **(목적)**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
- **(범위)** 2022~2031년(사실계획은 2021~2040년), 전국 모든 시·군의 광역·지방·마을상수도 및 전용수도 등 수도시설 해당
- **(주요내용)** 생동감 넘치는 신뢰받는 수도를 비전으로, 4대 목표, 16개 추진전략, 44개 이행과제 체계로 구성

※ (수립방향) 유역 수요관리 기반의 용수확보 및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민 중심의 수도서비스 성과 혁신,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및 수도사업 관리체계 개혁

○ 부합 여부 자체 평가 결과

- **(종합결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유역 내 물순환을 바탕으로 국가수도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므로, 건전한 물 순환 및 유역별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함

※ (주요내용)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이 유역 중심의 효율적 물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물복지, 광역·지방연계, 안정화, 스마트물관리(SWM)사업 등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획 수립

- **(계획 요소별 부합 여부 결과)**

부합성 자체 평가의 계획 요소*	부합성 자체 평가 결과**
(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 1 -

2. 부합성 심의 대상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① 계획 명칭	○ 국가수도기본계획
② 수립 기관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박진형 사무관, 044-201-7129, jinhpark@korea.kr)
③ 계획 기간 등	○ **계획 기간** : 2022~2031년(사실계획은 2021~2040년) ○ **구분** : 신규(☑), 수정( ), 기타( )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 -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근거** - '수도법' 제4조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2031년(사실계획-204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내용적 범위 : 국가수도 정책 및 추진과제,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재정계획
⑤ 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의 주요 내용** - **(수립목적)**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광역·지방상수도 통합·연계 강화** 및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주요내용)** 수도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별 추진과제 제시, 유역 중심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 마련, 수도시설의 확충·개량·안정화 계획 수립, 상수도 수질·수요관리 계획 마련, 재해대책 및 재정계획 수립 등 - **(계획구성)** 국가수도기본계획은 1편(정책편, 前 전국수도종합계획)과 2편(사실편, 前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되며, 3편은 종합보고서 및 4대 유역별 보고서로 구분 • 수도서비스 개선 및 지속가능한 상수도발전을 위해 기존의 수도분야 국가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수립 - 국가수도기본계획 목차(별첨1)
⑥ 계획의	○ **계획의 수립 절차**

- 3 -

3. 부합성 자체 평가의 결과

①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종합평가	○ **종합평가** (1) **(수립목표)**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 국내 용수 수요예측, 수도시설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수도사업의 경영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 수립 (2) **(부합성)**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물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 물 분야 인력 및 물 산업 강화, 수도사업의 예산·재정계획 등 주요 내용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 장래수요 및 수급전망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한 사유는 산정방식(기준년도, 공급능력 등)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함 ○ **계획요소별 평가 내용**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물 복지 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확보가 가능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공급능력 등 산정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어 장래 수요 및 용수수급 전망 등 일부 내용은 상이하나, 수립원칙 및 목적이 일치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 및 선제적 상수원관리 정책·실행과제 추진 등을 통해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이 가능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4)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 장래 물 부족 대비 유역 중심의 신규 대체수자원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이 가능하므로, 본 계획과 부합함

- 5 -

[붙임3]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전문기관)[2)]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 대상 계획: OO계획 -

2022. 1. XX.

전문검토기관명

목 차

1. 예비 검토 의견 ·····
(1) 예비검토 요약 ·····
(2) 예비검토 주요 내용 ·····
2.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5)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
(6) 물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
(10) 중장기 예산투자 방향 ·····
(11) 기타 ·····
붙임 1. 부합성 검토대상 항목 ·····

1. 예비검토 의견

(1) 예비검토 요약

계 획 명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기 관 명	영산강유역환경청
계획기간 등	ㅇ 계획 기간 : 기준년도 2010년, 목표연도 2040년 (5년 단위 4단계 계획) ㅇ 구분 : 신규( ), 수정(☑), 기타( )

부합성 평가의 계획 요소	검토 의견
(1)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혁신 방향	*(부합/보완필요/미부합/해당없음) 의견 요약*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11) 기타	

(2) 예비검토 주요내용

ㅇ **계획요소별 검토의견** (*예시*)

- (1) 예비검토 대상 계획은 유역 단위의 효과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에 부합함**
- (2) 대상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장래 수질(중권역 목표기준 달성도)는 국가계획의 **물수급 및 수질 전망에 부합하지 않음**
  · 다만, 대상 계획은 생활계 오염원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므로, 차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종합적인 목표기준 달성 계획 제시 필요
- (3) 대상 계획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중 방류수질에 관한 내용은 국가계획의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전략**의 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 및 수질기준 강화에 관한 추진과제와 **부합하지 않음**
  · 다만, 유역 내 생활계 오염부하량의 비중이 작아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강화하더라도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방류수질 강화의 경제성·실효성이 부족함
- (4)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전략 및 추진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계획 중 하수재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에서 수립
- (5)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전략 및 추진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계획 중 침수대응 하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에서 수립
- (6)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물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전략 및 추진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7)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전략 및 추진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공하수도 기반시설관리계획 등 중앙정부의 정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자산관리
- (8)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전략 및 추진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자산관리 실행계획은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함
- (9)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전략 및 추진과제에 **부합함**
- (10) 대상 계획은 국가계획의 **중장기 예산투자 방향에 부합함**
  · 국가계획의 이행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하수도사업 투자소요 및

2) '22년 전반기에는 "예비검토 보고서"로 표기하였으며 '22년 하반기 부터는 "부합성 전문검토 보고서" 양식으로 변경예정

[붙임4]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양식(지원기관)

부합성 예비 검토 보고서

- 대상 계획: 계획명 -

2022. 3.
(작성일자 작성)

전문검토기관

목 차

1. 종합 의견 ····· 1
(1) 부합성 예비검토 결과 ····· 1
(2) 부합성 예비검토 의견 ····· 2
2. 계획 요소별 예비검토 내용 ····· 4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 4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 5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6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7
(5)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 8
(6) 물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9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10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11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 12
(10) 중장기 예산투자 방향 ····· 13
(11) 기타 ····· 14

붙임 1. [참고자료] 계획 요소별 전문 예비검토기관 검토 내용 ····· 15
붙임 2.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전문 예비검토 기관 1) ····· 26
붙임 3. 부합성 예비검토 보고서 (전문 예비검토 기관 2) ····· 26

1. 종합 의견

(1) 부합성 예비검토 결과

계 획 명	대상 계획 명칭
기 관 명	계획 수립 기관
계획기간 등	○ 계획 기간 : ○ 구분 : 신규( ), 수정( ), 기타( )

부합성 평가의 계획 요소	부합성 평가 결과	비고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부합 (부합 3, 미부합 0, 해당없음 0)	
(2) 물수급 및 수질 전망		
(3)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4)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5)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		
(6)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7)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8)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9) 물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10)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11) 기타		

- 1 -

(2) 부합성 예비검토 의견

종합 의견	- 부합성 예비검토 결과 서술(부합함, 부합하지 않음, 해당없음) - 부합성 예비검토한 계획 요소의 주요 내용 서술
검토 의견	(1) 국가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 (2) 국가계획의 물수급 및 수질 전망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 (3) 국가계획의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 (4) 국가계획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 (5) 국가계획의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 (6) 국가계획의 물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 (7) 국가계획의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에 대한 예비검토 내용 서술 · 검토 의견 주요 내용 작성